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감사원)

23. 09. 25. 기준 업데이트

목차

※ 클릭 후 파란 글씨 클릭하면 해당 주제로 이동합니다.!

목차	1
들어가기 전에...	1
새소식	1
공지사항	1
풀리지 않는 문제, 감사원이 사전컨설팅해드리겠습니다.	1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결과, 적극행정면책합니다.	2
발간물	2
적극행정면책 제도	2
제도 개요	2
감사소명제도	2
적극행정면책 제도	2
감사소명제도	2
적극행정면책 제도	3
단계별 면책 제도 및 처리절차	5
감사원 면책사례	5
D센터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5
미디어폴 설치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감정평가의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택 아파트 매각업무 관련	5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및 CD교육지원청 신축이전 사업 관련	5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련	5
징수유예 승인 관련	7
체납기간 유예기간 연장 승인 관련	7
CD센터 소장 선발업무 관련	7
자부담 미이행 등 보조사업 추진 관련	7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 체결 관련	8
도로개설업무 처리 관련	8
공동주택용지 등 매각 업무 관련	8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 신축을 위한 행위허가 관련	8
보행환경개선사업 공사 분리 발주 관련	11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11

경영부실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11
재외공관 행정직원 채용 업무	11
학교세입세출외현금 횡령 및 관리·감독 업무	11
전통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업무	11
노외주차장 용지 내 건축허가 업무	11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업무	11
교실증축 등 학교부지 매입업무	11
나라장터의 생체인식보안기기 사용 허가	11
EF회관 승객용승강기 성능개선 공사 수의계약 체결	11
산하기관(협회) 상근 임원 추천	11
하수처리시설 사업자 선정	11
유럽국가 배당세액 환급 신청을 위한 회계법인 선정	11
본사 신사옥 매각업무 처리	12
사무실 이전 인테리어 공사비 집행	12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 협의업무 처리	12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용역 계약 관련	12
파산재단 사해행위 취소소송 지도·감독 관련	12
체육시설 무상 사용허가 관련	12
임기제공무원(보건소 의사) 채용 관련	12
낙찰 후 계약미체결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반환 업무 관련	12
지방보조사업자 지도·감독 관련	12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체결 관련	12
철도시설 전기분양 인계인수를 위한 합동점검 관련	12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입찰공고 관련	13
중점 정화대상 비위 징계의결 관련	13
세무조사 범위 확대 및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요구 누락	13
K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 수리	13
전복양식업 조성사업 추진	13
무기계약직 공개채용 업무 수행	13
특수차 운전 분야 채용 업무 수행	13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등 용역의 직고용 전환업무 수행	13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수립 및 전환업무 수행	13
콘도회원권 구입	13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전문위원 채용	13
군특성화고 지원사업 전문평기관 채용 등 보조사업 추진	13
짚라인 조성사업 추진	13
장애인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건	13
하수처리수 등 물 재이용 사업 추진	1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사업	17

전문병원 지정	17
특정법인 재산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처리	17
다목적선박 건조사업 추진	17
공유수면매립지 도시계획시설 준공검사	17
주민숙원사업 대상 선정 업무	17
정부위탁 수입 전비품에 대한 관세 등 면제	17
제안서에 인력투입 계획 항목 검토업무 처리	17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	19
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	19
종합청사 개발사업 업무 처리	19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업무 처리	19
의무장비 조달 계약업무 처리	19
외장판넬 구매계약 잔여기성금 정산 업무 처리	19
외장판넬 구매계약 계약이행심사 업무 처리	19
민간위탁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19
교량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19
CD콘텐츠기업육성센터 입주 기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관련	20
선박 유류구매계약 체결 관련	21
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업 계약 관련	21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21
동종업종에 대한 하도급 계약 승인	21
영상관제시스템 구매 설치사업 설계변경	22
전환근로자 처우개선금 이익처리	22
대체계류장 부지조성공사 설계변경 추진	22
이동전파종합감시차량 운행 중 안테나 훼손	2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민간 주주사 간 계약 등 처리	23
구조조정기업 매각 등 출자회사 관리 부적정	23
전문가 의견을 배제하고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사업 목표 설정	23
교통사고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인명피해사고를 대물사고로 처리	24
재공고 유찰을 사유로 한 수의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24
고객주차장 부지 임대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24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24
중부내륙선 고속화용역 발주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4
공유지 기부채납 절차 미이행에 관한 사항	25
구조전술훈련장비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25
야외 운동기구 예산 재배정 등에 관한 사항	25
그늘막 분할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25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25
환경기준 충족을 위해 계약변경 절차 없이 플랜트시설 소모성약품 추가 구매	25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전력증설 및 에어컨 전원 연결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	25
차질없는 여객터미널 운영을 위해 공사일정·순서 및 설계 변경 실시	25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다른 사업에 변압기 용량 증설 공사를 포함하여 추진	25
투기 방지를 위해 보유 부동산을 수의매각	25
직원들의 주거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기존 사택 임차보증금으로 새로운 사택 임차계약 체결	25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을 높이기 위해 시가표준액 대신 감정평가액을 적용	25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의 변상금을 대납	25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공사 추진	25
병역처분변경으로 자원입영 후 귀가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재신체검사 대상 처분	26
공사기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 운반 차량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	26
농공단지 조기 준공을 위해 별도의 입찰절차 없이 기존 공사를 설계 변경하여 공사 실시	26
하자 분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전설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긴급공사 추진	26
방학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학교 천장 전기공사 분할 계약	26
폭설에 따른 항공기 결항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제설제 구매 수의계약 체결	26
신규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컬러프린터 등 구매계약 체결	26
주식양도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성과물을 선 납품받은 후 용역계약 체결	26
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1차 용역 실패 후 추가용역 실시	26
신설 고등학교에 조속한 급식 제공을 위해 수의계약 체결	26
국민임대산업용지의 의무 임대기간 만료 전에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26
영구임대주택 내 장기미임대 상가를 주민 탁구장으로 조성하여 무상 임대	26
생태·환경자원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유재산 교환	26
감정평가자 추가 선정으로 수수료가 증가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교환차액 예산 절감	26
공영주차장의 지속 운영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허용	27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신도시에 119안전센터 임시청사 건립	27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예비비로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을 지원	27
입주기업의 영업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	27
학생 불편해소 및 신입생 유치를 위해 학기 중 재량휴업일 추가 지정	27
대학교 강사 부족으로 명예교수에게 강의 학점 초과 배정	27
공적자료가 아닌 해촉증명서 등을 근거로 연금보험료 소급 납부예외를 적극적으로 인정	27
재해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등급을 합리적으로 조정	27

발간물

사전컨설팅 제도

제도 개요

신청 및 운영 절차

감사원 사전컨설팅 처리사례

미검역 동물병원체 처리 및 활용 관련

공유재산법 상 교환에 의한 산림복지단지 토지 취득 관련

경쟁계약 유찰에 따른 예정가격 재산정 관련

통신회선 청약시스템을 통한 수의계약 관련

대안학교 변경인가	29
군 임시주둔지 내 컨테이너 담매소매인 지정 관련	29
이월 예비비 예산 전용	29
무단점유 도유 행정재산 양여 관련	29
항만재개발사업 조성공사 준공 전 수분양자의 토지사용 관련	29
디자인 특별전 관련	29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사업시행 시 군협의 대상 여부	29
R&D 추진방식 관련	30
무단적치된 폐기물에 대해 소송 중 처리가능 여부	30
사망 후 재심무죄 판결로 기존 파면처분이 취소된 공무원의 퇴직급여 처리 방안	30
기존공장의 설비교체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 가능 여부	30
국고보조사업 공통경비 인정 관련	30
국유재산 유상관리전환 분할 납부 관련	30
폐교재산의 공유재산법에 의한 대부 관련	30
도시철도건설사업 공동시행자 토지 지하보상 관련	30
과세정보 제공 관련	30
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승인 신청 관련	30
국유재산에 설치한 방음시설의 기부채납 가능여부	30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업무위탁을 위한 예산전용 관련	30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업체 손실보상 관련	30
상생소비지원금 지원사업 관련	30
자체감사기구 사전컨설팅 처리사례	30
경관조명 설치공사 위탁 관련	30
재원이 다른 예산의 통합발주 관련	30
근린공원 내 광역 클린하우스 설치 관련	30
보세화물 조기 폐기 관련	30
접도구역 해지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31
산업관광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품판매 관련	31
독립공원 조성이라는 사업에 대해 2개 기관의 각각 공사 발주 관련	31
공무원 임대주택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검토	31
발간물	31
모범사례 포상 제도	31
제도 개요	31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사례	32
2020년	32
건축 인·허가 처리기준을 개선하여 민원인 불편해소 등에 기여	32
농어촌 취약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로 출산환경 개선에 기여	32
무차단 교량 신축이음장치 점검기법 개발로 유지관리 업무 개선에 기여	32
국제공인 제품인증서 발급절차 마련으로 수출지원에 기여	32

외국인투자기업 고충 처리로 외자유치 등에 기여	32
독창적 교통신호기법 개발로 상습 정체구간 해소에 기여	32
적극적인 학교설립 지원으로 지역 교육여건 향상에 기여	32
잉여 소각열 판매로 자원회수시설 효율화에 기여	32
밸브박스덮개 자체개발로 예산절감 등에 기여	32
체계적 위험관리로 운영리스크 예방에 기여	32
참여·상생적 두루미 서식지 보호사업 추진으로 두루미 개체 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2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 지원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	32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운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기여	32
첨단 농산물재배기법 도입 등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실적 제고	33
적극적 의료지원으로 주민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	33
필수의약품 카나마이신의 위탁제조를 통해 다제내성 결핵 치료에 기여	33
적극적인 민원 해결로 안전한 수학여행환경 조성에 기여	33
발간물	33

들어가기 전에...

※ 타 직렬이나 혹은 기타 다른 문서가 궁금하시다면

 "아카이브  " 참조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공공누리 관련 공지 또한 위 링크에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https://open.kakao.com/o/sSL8zGSd>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출처 : <https://www.bai.go.kr/proactive/index.do>

저작권자 : 감사원

공공누리 : 4단계

새소식

공지사항

풀리지 않는 문제, 감사원이 사전컨설팅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할 땐 사전컨설팅

○ 신청주체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도의 교육감

○ 신청대상 : 규정·제도 등이 모호하거나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 자체 판단이 어려워 업무처리가 주저되는 사안

* 단순 민원해소 등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거나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사항은 반려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행행정기관, 시·도의 자체감사기구에 신청

자체감사기구는 자체판단이 어려운 사항의 경우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

※ 감사원의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결과, 적극행정면책합니다.

○ 신청주체 :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

○ 신청대상 :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항으로서 면책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사항으로서 사적 이해관계 등이 없는 사항은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 신청방법

- 감사기간 중 : 감사원 감사단에 '현장면책' 신청

- 감사기간 종료 후 :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에 '신청에 의한 면책' 신청

발간물

☰ ☂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발간물 1" (감사원) 참조

☰ ☂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발간물 2 完" (감사원) 참조

적극행정면책 제도

제도 개요

감사소명제도

감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감사결과의 처리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감사원에서 이를 검토하여 감사 결과에 반영하는 절차

적극행정면책, 사실관계 상이, 새로운 증거, 법령해석 차이, 정상참작 등의 사유로 제출가능

적극행정면책 제도

공직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분적 실수 등에 대해 책임을 감면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

관련 법령

- 「감사원법」 제34조의3,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3조
(감사원 규칙)
- 「공감법」 제23조의2, 「공감법 시행령」 제13조의 4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감사소명제도

감사소명자료의 제출

(소명자료 제출)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는 실지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 관련 소명서’(하단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소명자료와 함께 관계서류 1부를 감사원(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하여야 합니다.

“감사소명자료”란 처리 중인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및 소명자료 등을 말합니다.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감사 관련 소명서'에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별도 서식은 없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또는 연명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시기) 감사소명자료 제출은 감사위원회의 개최일 포함 3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담신청서 제출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한 이해관계자 등은 감사위원과의 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 관련 면담신청서」(하단 서식)를 작성하여 관계서류 1부를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하여야 합니다.

감사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 등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감사원에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명사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처분요구를 한 경우에는 처분요구의 시행으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적극행정면책 제도

적극행정면책 대상자 및 면책대상 처분요구 등

(면책 적용범위) 감사원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됩니다.

(면책 대상자) 「감사원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등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포함) 또는 임직원 등이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 대상 처분요구 등) 「감사원법」 제32조제1항의 징계요구, 같은 조 제8항의 문책요구, 같은 조 제9항의 해임요구, 같은 법 제33조제1항의 주의요구(기관주의도 포함) 등에 대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면책 기준 등

(면책기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을 모두 충족할 경우 위 면책기준 중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으로 추정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이행한 경우 면책기준 충족 추정) 감사원·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 면책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1. 동일한 사항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
2.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았을 것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적극행정면책 신청

(실지감사기간 중)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받는 사항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위해 수행한 업무라고 판단되어 실지감사기간 중에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받는 사항의 요지와 적극행정면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사유 등을 간략히 작성하여 마감회의 3일 전까지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기구는 ‘면책 검토 요청사항’을 취합하여 감사단장에게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지감사 종료 이후) 감사원 감사를 받은 자는 실지감사가 종료된 이후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감사관련 소명서’(하단 서식)와 ‘적극행정면책 사유서’(하단 서식)를 작성하여 관계서류 1부를 감사원(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하여야 합니다.

면책신청은 감사위원회의 개최일 포함 3일 전까지 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지감사기간 중에 적극행정면책이 인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실지감사 종료 이후에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극행정면책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등

면책신청을 한 경우나 감사원에서 직권으로 검토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직권면책

감사원은 면책대상자의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면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권면책은 감사기간 중 대상기관으로부터 면책 검토 요청을 받아 실시하는 ‘현장면책’과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 처리단계에서 감사단의 자체판단 또는 결재권자의 면책검토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처리단계에서의 직권면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장면책 신청) 수감자는 감사기간 중에 감사를 받는 사항이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적극행정면책 검토 요청서’(하단 서식)를 작성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고,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요청서를 취합하여 감사마감회의 3일 전까지 감사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장면책 결정) 감사단은 내부회의 결과 소명의견이 타당하다는데 이견이 없는 경우 면책결정을 하고 감사마감회의 시 면책 사실을 고지하며 추후 공문으로도 통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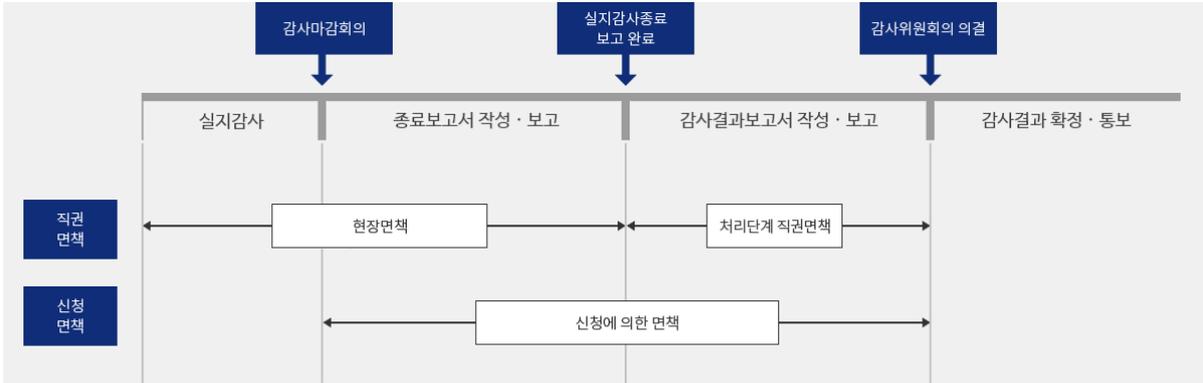
감사권익보호관제도

감사권익보호관제도는 감사원의 감사지적 내용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을 포함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소명인(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소명자료를 검토 지원하는 제도로써,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기 위하여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를 감사원 감사권익보호관으로 위촉하여 2015. 9. 1.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권익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소명인에게 연락하여 검토에 필요한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소명인은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권익보호관실(감사원 2별관 1층 소재)에서 감사권익보호관과 면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권익보호관은 관련 안건이 감사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배석하여 자유롭게 소명인의 입장을 대변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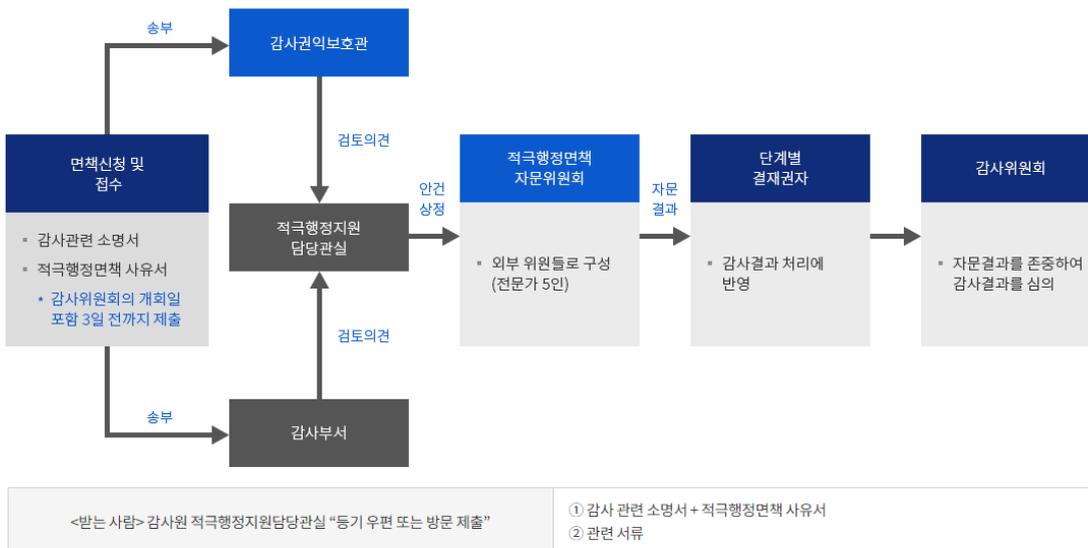
단계별 면책 제도 및 처리절차



1 현장면책



2 신청에 의한 면책



3 처리단계 직권면책

실지감사 종료보고 후부터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검토하는 과정에서 감사단 자체적으로 또는 검토·결재권자로부터 적극행정면책 여부에 대한 검토 지시를 받은 경우, 소명신청이 없어도 면책 여부를 직권으로 검토



감사원 면책사례

D센터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미디어폴 설치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감정평가의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사택 아파트 매각업무 관련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및 CD교육지원청 신축이전 사업 관련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련

구분	직권면책
지적 내용	AB시는 "AB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매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공고하여야 하는데도 2013년 1월 공고한 후 3년이 지난 2017년에야 추가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반영하여 변경 고시함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4억여 원 과소 부과
신청 취지	하수도 요금 기인상 및 국내외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부담을 낮추고자 하였음

인정 여부	<p>【인정】</p> <p>AB시는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추가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반영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여야 하나 하수도 요금 기인상 및 국내외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2017년 추가사업비 등을 반영한 단위단가를 변경고시하는 등 재정여건 및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면책 인정</p>
----------	---

징수유예 승인 관련

체납기간 유예기간 연장 승인 관련

CD센터 소장 선발업무 관련

자부담 미이행 등 보조사업 추진 관련

구분	직권면책
지적 내용	<p>AB군은 “시장간판 조형물 설치” 등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인 CD시장 상인회가 2018년 2월까지 3개 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계 4천3백여만 원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두고 있었음</p>
신청 취지	<p>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자본금이 많지 않은 상인회가 미이행한 자기부담금에 대한 조치 등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음</p>
인정 여부	<p>【인정】</p> <p>「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일부 위반하였으나 상인회 소유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면책 인정</p>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 체결 관련

구분	직권면책
지적 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참여 비율(전체공사에서 해당 공정 비율)이 최저 4% 이상일 경우에만 공동계약이 가능한데도 AB시는 기계설비 공사 비율이 2.7%(금액 1.4억 원)에 불과한데도 공동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
신청 취지	중소전문건설사가 계약에 참여하도록 하여 저가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인정 여부	【 인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일부 위반하였으나 중소기업전문건설사가 계약에 참여하도록 진행한 것은 저가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면책 인정

도로개설업무 처리 관련

공동주택용지 등 매각 업무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 신축을 위한 행위허가 관련

구분	직권면책
----	------

지적 사항	<p>AB군은 농수산물 보관 관련 창고시설 신축허가를 처리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규정과 다르게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에게 농수산물 보관 관련 창고시설 신축을 허가</p>
신청 취지	<p>민원인의 생업에 필수적인 저장고 용도의 창고시설로 배 수확 시기에 맞추어 신속히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원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처리</p>
인정 여부	<p>【 인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민원인과 가족(부자) 관계로 공동으로 과수(배)를 생산하고 있으며, 허가시설이 과수(배) 농사를 하는 민원인의 생업에 필수적인 저장고 용도의 창고시설임 AB군이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배 수확 시기에 맞추어 신속히 처리하는 등 민원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면책 인정</p>

[보행환경개선사업 공사 분리 발주 관련](#)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경영부실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채용 업무](#)

[학교세입세출의현금 횡령 및 관리·감독 업무](#)

[전통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업무](#)

[노외주차장 용지 내 건축허가 업무](#)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업무](#)

[교실증축 등 학교부지 매입업무](#)

[나라장터의 생체인식보안기기 사용 허가](#)

[EF회관 승객용승강기 성능개선 공사 수의계약 체결](#)

[산하기관\(협회\) 상근 임원 추천](#)

[하수처리시설 사업자 선정](#)

[유럽국가 배당세액 환급 신청을 위한 회계법인 선정](#)

구분	신청에 의한 면책
지적 사항	<p>AB공사는 2015년 10월 유럽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기 납부한 배당세액 환급을 받기 위해 용역업체 선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계약법령 상 추가자료 제출기한은 긴급 입찰공고 기간(10일)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3일을 기한으로 정량평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입찰업체에 요구</p> <p>이 과정에서 해당 기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CD회계법인에 가장 낮은 정량평가 점수를 부여하였지만 평가점수(정성평가 60%, 정량평가 40%) 합산결과 EF회계법인의 탈락이 확인되자</p>

	<p>AB공사 담당 팀장 A는 정성평가 점수가 잘못되었다는 사유로 평가점수를 임의로 조정한 후 평가 당일 작성한 것처럼 평가서의 평가날짜를 변경하여 EF회계법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위 업체와 계약체결(16만 달러)</p>
신청 취지	<p>정량평가를 위한 추가자료 요청에 대해 CD회계법인만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해 최저 점수를 부여한 것이고 당초 팀장 A의 정성평가 점수에 잘못이 발견되어 사후에 조정한 것임</p> <p>또한, 관련 업체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결과적으로 EF회계법인과 계약 금액이 CD회계법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적어 공사에 이익을 제공</p>
인정 여부	<p>【 인정 】</p> <p>팀장 A는 평가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 사후에 CD회계법인의 정성평가 점수를 수정하고 임의로 불리한 정량평가 점수를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EF회계법인이 최종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은 인정되나</p> <p>CD회계법인이 선정될 경우 EF회계법인과 달리 추가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고 CD회계법인은 별도의 제출기한 연장 요청도 없이 추가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성공적인 용역 목표 달성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금환급용역수행에 더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면책</p>

[본사 신사옥 매각업무 처리](#)

[사무실 이전 인테리어 공사비 집행](#)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 협의업무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용역 계약 관련](#)

[파산재단 사해행위 취소소송 지도·감독 관련](#)

체육시설 무상 사용허가 관련

임기제공무원(보건의 의사) 채용 관련

낙찰 후 계약미체결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반환 업무 관련

지방보조사업자 지도·감독 관련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체결 관련

철도시설 전기분양 인계인수를 위한 합동점검 관련

구분	직권면책
지적 사항	AB 공단 및 CD 공사에서 EF선 준공 시 전기시설을 인계인수하면서 「전기분야 인계인수협정서」에 따른 합동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선로전환기의 신호케이블 설치 오류를 확인할 가능성 상실
신청 취지	GH부의 인수인계규정인 「철도선설사업 시행지침」(국토부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 기관에서 스스로 마련한 것, 전기분야 이외 다른 분야에는 유사한 협정서가 없는 상황이었음
인정 여부	【 인정 】 「전기분야 인계인수협정서」는 GH부의 인수인계규정인 「철도선설사업 시행지침」(GH부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 기관에서 스스로 마련하였고 전기분야 이외 다른 분야에는 유사한 협정서가 없는 상황에서 전기분야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마련한 위 협정서를 근거로 감사원에서 처분 요구하는 것은 적극행정 의지를 경감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면책 인정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입찰공고 관련](#)

[중점 정화대상 비위 징계의결 관련](#)

[세무조사 범위 확대 및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요구 누락](#)

[K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 수리](#)

[전북양식섬 조성사업 추진](#)

[무기계약직 공개채용 업무 수행](#)

[특수차 운전 분야 채용 업무 수행](#)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등 용역의 직고용 전환업무 수행](#)

구분	신청에 의한 면책
지적 사항	<p>AB공사는 CD시의 EF역 사고 수습대책에 따라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등 5개 분야의 용역 위탁업체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하기로 하면서 제6회 이사회에서 전·현직 직원의 친인척은 배제하기로 의결</p> <p>이후 위탁업체 친인척 실태를 조사하여 21명이 위탁업체에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합리적인 친인척 배제기준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지원자 본인에게만 채용경로(공채/특채)를 파악하여 특채로 응답한 인원만 배제하기로 결정한 후 면접위원에게 배제대상자 명단을 제공</p> <p>그 결과 총 15명의 친인척이 위탁업체 채용과정에 대한 검증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그 중 14명은 이후 일반직으로 전환</p>

<p>신청 취지</p>	<p>위탁업체 직원을 신속하게 직접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7회 이사회에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배제는 곤란하다’는 의견과 평등권 위배 소지가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채용계획을 마련하였고 전환대상자들의 채용경로는 위탁업체의 비협조로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회의를 통해 특채로 확인된 10명을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짧은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해 채용을 마무리하였음</p>
<p>인정 여부</p>	<p>【 인정 】 당시 신속한 직영체제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전에 외부 법률자문을 받고 친인척 관련자 21명을 파악한 후 나름대로 배제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됨</p>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수립 및 전환업무 수행

콘도회원권 구입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전문위원 채용

군특성화고 지원사업 전문평기관 채용 등 보조사업 추진

짚라인 조성사업 추진

장애인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건

하수처리수 등 물 재이용 사업 추진

<p>구분</p>	<p>신청에 의한 면책</p>
-----------	------------------

지적 사항	<p>AB광역시는 CD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를 4개 업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다 2012년 CD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수 재처리시설을 설치하여 2015년부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유상 공급을 추진</p> <p>해당 업체들이 기존 하수처리수 수질에 문제가 없고,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하수처리수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는데도</p> <p>시의회 지적 등을 이유로 업체 요청과 달리 재처리수를 유상으로 공급하여 2015~2018년까지 10억여 원의 사용요금을 부과하여 기업부담 초래</p>
신청 취지	<p>재처리수 공급은 2014년 2월 시의회 지적(재처리수 공급이 가능함에도 하수처리수 무상공급은 부당)이 있어 법령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하였고</p> <p>기존 수요업체와 수차례 협의를 실시하고 관계자 회의 등 의견수렴을 통해 재처리수 공급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음</p>
인정 여부	<p>【인정】</p> <p>「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처리수의 10% 이상을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해야 하므로 공중위생성과 수질환경 관리의 경제성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재처리수를 우선 공급하도록 하였고</p> <p>2014년 12월 시의회 주요업무보고 시 하수처리수 무상공급에 대한 지적이 있어 재처리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을 고려하여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p>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사업

전문병원 지정

특정법인 재산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처리

다목적선박 건조사업 추진

공유수면매립지 도시계획시설 준공검사

주민숙원사업 대상 선정 업무

정부위탁 수입 전비품에 대한 관세 등 면제

제안서에 인력투입 계획 항목 검토업무 처리

구분	신청에 의한 면책
지적 사항	<p>AB청에서 2018년 4월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제주항로 정기 여객운송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참가 업체 중 CD업체가 제안서(인력투입계획)에 “선원 17명 확보”로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고용 증빙자료는 첨부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제안서 평가 시점에 17명 중 14명만 확보한 상태였는데도 EF청은 제안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않고 증빙자료가 미비하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알리지도 않은 채 평가를 진행하여 B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결과 초래</p>
신청 취지	<p>세월호 사고 이후 인천~제주항로 여객선 운항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여객 및 물류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제주 사이의 원활한 물류 수송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여객선 운항을 재개할 목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였고 1개 업체만 참여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던 2016년의 참가자격과 평가기준으로는 다수 업체의 참여가 불가능하여 신설법인의 신용도 최저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7명)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하였음</p>

인정 여부	<p>【 인정 】</p> <p>HI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세월호 사고로 장기간 중단된 인천~제주항로의 여객선 운항 재개라는 공익목적을 위해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회사가 사업자 선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방법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이 인정됨</p>
-------	--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

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

종합청사 개발사업 업무 처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업무 처리

의무장비 조달 계약업무 처리

외장판넬 구매계약 잔여기성금 정산 업무 처리

외장판넬 구매계약 계약이행심사 업무 처리

민간위탁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교량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구분	직권면책
----	------

지적 사항	2019년도 정기안전점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제3종 시설물인 AB교, CD교, EF교는 안전등급 B·C등급으로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총 용역비 1억 1천7백만 원 지급
신청 취지	교량 설치시기가 50년 이상으로 육안점검으로는 시설점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문단 의견)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음
인정 여부	【 인정 】 AB도에서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닌데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나 교량 설치기 50년이 경과(AB교 1965년, CD교 1971년, EF교 1964년 각각 설치)하여 육안점검인 정기안전점검만으로는 시설점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자문단의 의견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

CD콘텐츠기업육성센터 입주 기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관련

구분	직권면책
지적 사항	AB도가 CD콘텐츠기업육성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을 선정하면서 모집공고문의 입주 자격(3개월 이내 본사 이전)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퇴거명령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지원금을 지급
신청 취지	해당 기업에 지원금 지급은 기업이 AB도 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을 통해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

인정 여부	<p>【 인정 】</p> <p>AB도에서 모집공고문의 입주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p> <p>해당 기업이 AB도 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AB도 콘텐츠산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어 면책</p>
----------	--

선박 유류구매계약 체결 관련

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업 계약 관련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구분	직권면책
지적 사항	<p>AB공단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성능인증서를 신속히 발급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성능시험 결과를 잘못 계산하여 2등급을 1등급으로 잘못 기재하는 등 9건의 성적서를 잘못 발부</p> <p>※ 감사 기간 중 모두 정정하여 재발급</p>
신청 취지	<p>간이측정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2개월 이내에 인증서 발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증서 회수 후 재발급하여 문제를 조속히 해결</p>

인정 여부	<p>【 인정 】</p> <p>H공단에서 성능시험 결과를 잘못 계산하여 오류가 있는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간이측정기를 판매하려는 사업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으나</p> <p>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2개월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노력하는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인증서를 회수하여 재발급하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였으며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이 없어 면책 인정</p>
----------	---

동종업종에 대한 하도급 계약 승인

영상관제시스템 구매 설치사업 설계변경

구분	직권면책
지적 사항	<p>AB공사는 영상관제시스템 구매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7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동지역 스마트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6.5억 원)을 2018년 3월 계약 체결한 “CD공항 영상관제시스템 구매설치 사업”에 설계변경으로 추진</p>
신청 취지	<p>이동지역 스마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 바가 있는 점을 사유로 면책 신청</p>
인정 여부	<p>【 인정 】</p> <p>업무담당자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을 위반하여 일반경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이동지역 스마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이 원계약의 설계변경 사유 등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p> <p>안전사고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일부 기여한 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면책 인정</p>

전환근로자 처우개선금 이익처리

대체계류장 부지조성공사 설계변경 추진

구분	직권면책
지적 사항	AB공사는 “CD 부지조성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방식으로 추진하였어야 하나, 기존에 공사 중인 “EF 시설공사”를 설계변경 후 “CD 부지조성공사”를 시공
신청 취지	공사 지연 시 항공수요 급증에 따른 공항 수용한계 초과로 공항 혼잡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국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성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면책 신청
인정 여부	<p>【 인정 】</p> <p>업무담당자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을 위반하여 일반경쟁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지 않았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용역 공고 및 발주, 공사 입찰공고를 거쳐 위 공사를 진행할 경우 준공이 늦어질 상황이었으며,</p> <p>CD 부지조성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후속 공사인 “GH 확장공사”가 지연되어 항공수요 급증에 따른 공항 수용한계 초과로 공항 혼잡 및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었고 일반경쟁과 비교하여 9억 원이 절감</p>

이동전파종합감시차량 운행 중 안테나 훼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민간 주주사 간 계약 등 처리

구조조정기업 매각 등 출자회사 관리 부적정

전문가 의견을 배제하고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사업 목표 설정

교통사고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인명피해사고를 대물사고로 처리

재공고 유찰을 사유로 한 수의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고객주차장 부지 임대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중부내륙선 고속화용역 발주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구분	직권면책
지적 사항	<p>A공단은 '19. 10월 중부내륙선 B-C구간 “◇◇차량 도입을 위한 고속화연구 보완용역”(7.5억 원) 시행</p> <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따르면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발주 시 공개경쟁을 통해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위 공단은 공개경쟁 없이 기존에 진행 중이던 B-C구간 건설사업에 위 용역을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용역 시행</p>

인정 여부	<p>【 인정 】</p> <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개경쟁 없이 설계변경을 통하여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p> <p>'14. 12월 B-C구간을 착공하여 건설 중인 과정에서 '19. 10월 D부로부터 고속화 검토 지시에 따른 용역수행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용역 수행 시 총사업비 협의, 발주계획 수립 등으로 10개월의 추가 기간과 용역완료 既 시공분 보완시공비 99억여 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개통('21. 12월)도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어 개통시기 준수 및 사업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D부와 미리 협의하였고</p> <p>용역비도 '설계용역대가 조정을 결정 평가위원회'를 거친 후 既 발주공사 설계변경으로 추진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면책함</p>
-------	--

[공유지 기부채납 절차 미이행에 관한 사항](#)

[구조전술훈련장비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야외 운동기구 예산 재배정 등에 관한 사항](#)

[그늘막 분할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환경기준 충족을 위해 계약변경 절차 없이 플랜트시설 소모성약품 추가 구매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전력증설 및 에어컨 전원 연결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

차질없는 여객터미널 운영을 위해 공사일정·순서 및 설계 변경 실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다른 사업에 변압기 용량 증설 공사를 포함하여 추진

투기 방지를 위해 보유 부동산을 수의매각

직원들의 주거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기존 사택 임차보증금으로 새로운 사택 임차계약 체결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을 높이기 위해 시가표준액 대신 감정평가액을 적용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의 변상금을 대납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공사 추진

병역처분변경으로 자원입영 후 귀가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재신체검사 대상 처분

공사기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 운반 차량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

농공단지 조기 준공을 위해 별도의 입찰절차 없이 기존 공사를 설계 변경하여 공사 실시

하자 분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전설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긴급공사 추진

방학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학교 천장 전기공사 분할 계약

폭설에 따른 항공기 결항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제설제 구매 수의계약 체결

신규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컬러프린터 등 구매계약 체결

주식양도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성과물을 선 납품받은 후 용역계약 체결

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1차 용역 실패 후 추가용역 실시

신설 고등학교에 조속한 급식 제공을 위해 수의계약 체결

국민임대산업용지의 의무 임대기간 만료 전에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영구임대주택 내 장기미임대 상가를 주민 탁구장으로 조성하여 무상 임대

생태·환경자원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유재산 교환

감정평가자 추가 선정으로 수수료가 증가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교환차액 예산 절감

공영주차장의 지속 운영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허용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신도시에 119안전센터 임시청사 건립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예비비로 영화칼슘 살포기 구입을 지원

임주기업의 영업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

학생 불편해소 및 신입생 유치를 위해 학기 중 재량휴업일 추가 지정

대학교 강사 부족으로 명예교수에게 강의 학점 초과 배정

공적자료가 아닌 해촉증명서 등을 근거로 연금보험료 소급 납부예의를 적극적으로 인정

재해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등급을 합리적으로 조정

발간물

☰ ☂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적극행정면책 제도 발간물" (감사원) [신청시 공개] 참조

☰ ☂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발간물 1" (감사원) 참조

☰ ☂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발간물 2" (감사원) 참조

사전컨설팅 제도

제도 개요

감사원 사전컨설팅의 개념

사전컨설팅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불명확한 법령·규제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원은 일선 행정현장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원의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예:사적 이해관계 존재)이 없으면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징계·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 제2항)

신청 및 운영 절차

신청 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자체적으로 사전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감사원이 직접 사전컨설팅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기에 앞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사전질의하여야 합니다.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상급기관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상급기관의 자체감사기구는 원칙적으로 컨설팅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데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 당해 상급기관의 장 명의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대상

소속기관(부서)이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감사원 감사대상 업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려할 수 있습니다.

- ① 관계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②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 ③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 ④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 ⑤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등 사전컨설팅으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경우

감사원 사전컨설팅 처리사례

즉석식 인쇄복권 제조 용역 계약변경 관련

임상시험 목적의 의원 개설신고 수리 관련

신도시 예정지역 도로개설공사 관련

식품기부법 사업비 보조금 지원 관련

농지전용 협의 관련

기설립법인에 대한 지방출자기관 지정 및 고시 관련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건축물 양도신고 관련

소멸시효 완성된 육아휴직수당 복직합산금 지급 관련

사회적 경제유통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관련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동의 관련

국유재산의 수의방식 사용허가 관련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관련

구 산업입지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적정성 관련

미검역 동물병원체 처리 및 활용 관련

공유재산법 상 교환에 의한 산림복지단지 토지 취득 관련

[경쟁계약 유찰에 따른 예정가격 재산정 관련](#)

[통신회선 청약시스템을 통한 수의계약 관련](#)

[대안학교 변경인가](#)

[군 임시주둔지 내 컨테이너 담매소매인 지정 관련](#)

[이월 예비비 예산 전용](#)

[무단점유 도유 행정재산 양여 관련](#)

[항만재개발사업 조성공사 준공 전 수분양자의 토지사용 관련](#)

[디자인 특별전 관련](#)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사업시행 시 군협의 대상 여부](#)

사전컨설팅 의견서

신 청 일	2020. 9. 28.
신청 기관명	□□도(○○시)
건 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군(軍)협의 관련

I 업무 개요

- ○○시는 '20. 6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식회사 △△△로부터
○○○○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14. 12월 준공) 내 중심상업용지에서
시행하는 복합시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음
-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
(이 건 ○○시장임)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규정(「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한편, 국방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6916호, '03. 11. 30. 시행) 제3조에 따라
 - '04. 12월 ○○○○ 택지개발지구 지정 시 '사안별 세부계획 수립 시
관할부대와 협의'하도록 협의의견 제시
- 그리고 관할부대 및 국방부는 각각 '20. 4월 및 같은 해 9월 위 사업
부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른 보호
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 위 사업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작전에 제한사항이 초래되므로

-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위 **협의의견을 근거로** 위 사업부지 내에 건축물 신축 시 작전성 검토* 등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 표명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재산권 행사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및 해소대책 등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11조)

- 이에 ○○시는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국방부의 협의의견*에 따라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관할부대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20. 9. 28. 접수)

* 사안별 세부계획 수립 시 관할부대와 협의

II 신청 요지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이면서 군사기지법 상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위 사업부지 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 택지개발지구 지정 시의 국방부 협의의견을 적용하여 관할부대와 반드시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III 검토 결과

- 「주택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 제1항 각호(25개 법령)에 해당하는 인·허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 * 건축허가신고(「건축법」),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수도사업인가(「수도법」) 등
-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고, 시장·군수 등은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해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해당 지구의 입지 특성, 개발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건축물의 높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규정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함(국토계획법 제54조)
- 또한, **군사기지법 제13조**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 등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 또는 관할부대와 협의**하여야 하고
 -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허가 등을 한 경우 허가 취소, 행위 중지, 원상회복 등의 대상이 됨
- 한편, 국방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6916호, '03. 11. 30. 시행) 제3조에 따라
 - ○○○○ 택지개발지구 지정('04. 12월) 시 ‘**세부계획 수립 시 관할부대와 세부협의**’하도록 **협의의견**을 제시하였고
 -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시와 구 대한주택공사는 **사업 준공 시 까지** 세부계획에 대해 군부대와 **협의**하는 것으로 조치계획 수립

- 이에 따라 관할부대 및 국방부는 ○○○○ 택지개발지구 지정 시의 협의의견을 근거로 이 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작전성 검토 등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그런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은 「주택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 이 건 **관할부대(국방부)**는 해당 규정의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 등의 처리권한이 없어 「주택법」 상 **협의를 거쳐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되지 않고**
 - 더욱이 위 사업부지는 군사기지법에 따른 보호구역이 아니므로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군사기지법 제13조에 따라 관할부대와 작전성 검토 등 협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 그리고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등에 따라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사항으로**
 - 이 건 실시계획(○○○○지구 지구단위계획 포함) 승인 시 국방부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의견은 없었고
 - ○○○○지구 지구단위계획 상 위 사업부지의 경우 ○○역세권 개발 촉진 등을 위해 **높이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또한, 위 사업부지는 ○○○○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14. 12. 31. 준공된 지구로서 더 이상 “개발사업 지역”으로 볼 수 없고
 -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시 등은 사업 준공시까지 세부 계획에 대해 관할부대와 협의하기로 하였는 바

- 이미 완료된 ○○○○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관련한 국방부의 **협의의견**을 택지개발사업 지역이 아닌 곳에서 시행되는 위 주택건설 사업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제한될 것으로** 사료되며

- 설사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국방부의 협의의견이 위 주택건설사업에까지 적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협의의견은 자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그 의견에 따라 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님*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독653판결

○ 따라서 ○○시가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관할부대 등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 건 사전컨설팅 신청 사항인 관할부대와의 협의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의 필요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 범위 내)할 수 있는 바*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누10883 판결

- ○○시는 위 사업부지 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지 여부와

- ○○○○지구 지구단위계획 상 위 사업부지 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지 아니한 취지* 및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의 신뢰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역세권 개발촉진, 상업·업무주거·위락 기능 통합, 상징적·중심적 전략시설 유치 등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함(국토계획법 제54조)

IV 종합 의견

- ○○○○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 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관할부대 등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시의 의견은
 - 「주택법」 제19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관련 판례(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 653 등) 등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행정청은 공익상의 필요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바
 - ○○시는 이 건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와
 - ○○○○지구 지구단위계획 상 위 사업부지 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지 아니한 취지 및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의 신뢰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사전컨설팅 관련 적극행정정책기준 안내문 ▷

-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정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정책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정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전컨설팅 의견은 귀 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위 사안에 국한하여 제공된 것이며, 위 업무처리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전컨설팅 의견서

신청일	2019. 8. 19.
신청기관명	○○○
건명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R&D 추진방식 관련

I 업무 개요

- 최근 일본의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 대두
 - 이에 ○○○는 '19. 8. 2. 국회심의를 통과한 추경예산 중 1,773억 원을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등에 투입하기로 함과 동시에 8. 5.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 한편 ○○○ ◇◇◇◇◇◇과는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R&D 제도 개선대책 마련, “정책지정*을 통한 R&D 활성화”를 개선안으로 수립
 - * 정책지정 :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수행과제 및 수행기관을 공모절차 없이 지정·선정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과제추진’ 및 ‘비공개’ 필요시 적용
 - 8. 8. 정책지정의 근거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고시)을 개정하여 정책지정의 요건 및 절차를 구체화하였고
 - 8. 23. 실시한 소재부품 분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신규 과제 선정 시 정책지정 방식을 적용(650억 원 상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사항 (8.8일, 000고시)》

개정 이전	개정
<p>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9. “정책지정”이라 함은 <u>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u>을 말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9. “정책지정”이라 함은 <u>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대외 비공개 필요성, 기타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필요시 경쟁형 방식이나 복수지원 방식 또는 제한모집 방식으로 추진 가능)을 제5조의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방식</u>을 말한다.</p>

- 000는 핵심 소재·부품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개정된 위 요령에 따라 **정책지정을 기업 중심·중복과제 방식**으로 확대 활용해 나가고자 하나,
- 그간 **비영리기관·단일과제**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추진했던 과거의 방식과 차이가 있어 적극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 발생, 이에 사전에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컨설팅 신청

II 신청 요지

- 정책지정 방식 적용과 관련하여 ① 향후 대규모 기업 위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 수행 과제에 대해 ‘복수지원’ 하는 등 중복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III 검토 결과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에 따르면 산업기술 분야 연구개발(R&D)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000 소관 하에 연구기관·대학·기업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 위 법에서 사업 추진주체인 “기술혁신주체”에 **기업**을 포함하여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 장관은 **기업**으로 하여금 산업 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이 경우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 산업기술개발사업 추진주체인 **기업**과 산업기술 R&D 과제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출연·보조**할 수 있음을 명시
- 더욱이 사업 수행기관 선정 등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하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 장관이 정하는 기준인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고시, 이하 “요령”)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 사업의 수행기관·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인 이 건 **정책지정**의 경우 위 **요령** 제2조 제1항 제19호에 근거를 두고 있음
- 따라서, 이 건 정책지정 대상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부의 권한에 해당되므로, **정책지정 제도 운영**(기업 및 중복 과제 위주)에 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할 사안
 - 다만, 공모와 달리 **특정 기업**을 **비공개**로 지정하는 정책지정의 경우 **공정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다수 기업을 동시에 연구개발에 참여시키는 **중복과제 방식**으로 활용할 경우 **예산낭비** 등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재량의 일탈·남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선정 기준·절차 등)를 ○○○ 내부적으로 **합리적으로 마련**하였는지 검토 필요

- 그런데 ○○○는 일정 조건 하에서만 정책지정 과제 수행기관 및 중복 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정책지정 수행기관 및 중복과제 선정 기준》

1. 수행기관 선정 기준

- ① 기술력·인프라를 보유한 국내 유일 기업인지 여부(그 기업만을 통해 국산화 기술개발 가능)
- ② 기술이전, 정부과제, 자체투자 등으로 선행기술 既 확보 여부
- ③ 수요기업의 협력의사 여부(수요기업이 과제에 참여하여 공급기업에 스펙 제공)

2. 중복과제 선정 기준

- ① 제한모집형 : 국내 공급 기업이 다수이고, 여러 기업이 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 한정된 후보기업 대상으로 평가 후 단일 기관 지원
- ② 경쟁형 : 중요 품목 대상, 1단계(2~3개 기관 1~2년) → 평가 → 최종(단일 기관 추가 R&D 2~3년)
- ③ 복수형 : 매우 중요한 품목 대상, 단일 과제에 대해 2~3개 기관을 중복으로 지원

- 절차적으로도 과제기획→확정→평가 등 전 과정에서 수행 기업의 적정성 및 중복과제의 필요 여부에 대해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첩적으로 절차를 마련하였고

《정책지정 과제 관련 선정 절차》

- ① 소관 업종과에서 판단 → ② 전문가 그룹(PD 중심 민간전문가)에서 판단 → ③ 사업심의위원회 확정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재검토 → ④ 평가위원회에서 연구 수행자 적정 여부 등 재검토

* R&D 사업의 기획과 과제수행 점검, 성과관리 등 R&D 전 주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으로부터 채용한 자료, 반도체·자율주행차·의료기기·첨단장비 등 11개 분야에 적용

-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지정 수행기관의 적정성 및 중복과제 필요성에 대해 사전에 심의한 후 수행기관 및 중복과제 추진여부를 의결하면
- 이 후 실시하는 사업계획서 평가단계에서도 수행기관의 역량 및 중복과제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재검토한 후 최종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등 사전에 다양한 주체에 의해 심의·평가절차가 이루어
지도록 제도화

○ 따라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내부방침으로 정하고 있고,
사업 단계별로 위원회 심의·평가 등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정책지정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다만, 향후 정책지정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자체 방침만으로
수행기관 선정 기준·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특혜 시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 정책지정을 통해 사업비를 출연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2조에 따라 그 성과 등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참여배제 기업 등에서 제기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 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 사업비 출연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 ①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제11조의2) :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 사용한 경우 등에는 ○○○ 장관이 발주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사업비 환수
- ②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제11조의3)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③ 기술료 징수(제12조) : 산업기술개발사업 완료후 그 결과를 활용하는 자로부터 징수

- 중복지원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 품목 및 그 중요도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이지 않도록 객관화·유형화하여 향후 우려되는 예산낭비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IV 종합 의견

- 이 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19호의 정책 지정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수행기관을 기업 위주로 선정하고 수행과제를 중복으로 지원할지 여부는 ○○○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할 사안에 해당되나,
 -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내부 방침으로 정하고 있고 사업 단계별로 있어 위원회 심의·평가 등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 건 정책지정 방식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다만, 과제 수행기관 선정 기준에 관하여 특혜 시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연구개발 성과 평가·기술료 납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참여 배제기업 등에서 제기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 등을 최소화하며
 - 중복지원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 품목 및 그 중요도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이지 않도록 객관화·유형화하여 향후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사전컨설팅 관련 적극행정면책기준 안내문 ▷

■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전컨설팅 의견은 귀 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위 사안에 국한하여 제공된 것이며, 위 업무처리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망 후 재심무죄 판결로 기존 파면처분이 취소된 공무원의 퇴직급여 처리 방안

기존공장의 설비교체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 가능 여부

국고보조사업 공통경비 인정 관련

국유재산 유상관리전환 분할 납부 관련

폐교재산의 공유재산법에 의한 대부 관련

사전컨설팅 의견서

신청일	2020. 9. 28.
신청기관명	□□□□교육청
건명	폐교재산의 공유재산법에 의한 대부 관련

I 업무 개요

- □□□□ ○○교육지원청은 '20. 3. 1. 폐교가 된 ▷▷중학교 시설 및 부지(이하 “▷▷중학교”)를 폐교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지가상승 예상 이유를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자체활용방안 마련
- 한편, ○○공항 건설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은 '20년 6월 ○○공항 건설예정지와 인접(직선거리 4km 상당)한 ▷▷중학교를 관리사무소·직원 숙소로 활용할 목적으로
 -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수의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을 근거로 ○○교육지원청에 ▷▷중학교를 수의대부 요청
- 그런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은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 폐교재산은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

귀촌 지원시설 및 소득증대시설(이하 “교육용시설 등”)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이하 “수의특례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중학교를 교육용시설 등으로 활용할 목적이 아닌 △△은 폐교 활용법 상 수의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미해당

[그림] ▷▷중학교 시설 및 부지



-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일반입찰에 의해 폐교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통상 폐교재산을 폐교활용법 상 교육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폐교재산의 대부용도를 지정(이하 “대부용도 지정”)*하여 입찰공고를 하고 있어
 - * □□□□교육청 등 시·도교육청은 폐교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일반입찰에 의해 대부하는 경우에도 폐교활용법의 취지를 감안, 당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타용도로는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대부용도를 지정하여 공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자가 아닌 경우 입찰에 참여 불가
- 이에 ○○교육지원청은 폐교재산인 ▷▷중학교를 일반입찰을 거치지 않고 △△에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수의로 대부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로 사전컨설팅 (보완) 신청('20. 8. 25. 및 9. 28.)

II 신청 요지

- ○○교육지원청이 폐교재산을 폐교활용법 상 교육용시설 등이 아닌 용도로 대부하는 경우 일반입찰을 거치지 않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로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

III 검토 결과

- 이 건 ○○교육지원청이 폐교재산을 폐교활용법 상 교육용시설 등이 아닌 용도로 대부하는 경우 일반입찰을 거치지 않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로 대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 폐교활용법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폐교 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 그런데 폐교활용법에는 교육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수의로 매각·대부할 수 있다는 수의특례규정 외에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 폐교재산에 대해 폐교활용법 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교활용법을 우선적용하되, 폐교활용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공유재산법을 적용하여야 함
 - * 행정안전부는 폐교활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폐교활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폐교활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일반법인 공유재산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 따라서 ○○교육지원청은 폐교재산의 대부용도를 폐교활용법의 입법 취지, 대부계획 공지 등을 통한 교육용시설 등에 활용하려는 자가 있는지 여부, 당해 폐교재산의 장래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한 후

* 교육부는 이 건과 관련하여 폐교활용법에서 규정한 교육용시설 등 공적 용도가 아닌 기타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공유재산으로서 일반법인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당해 폐교재산을 폐교활용법 상 교육용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없어 기타용도로 대부할 때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8호의 수익계약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일반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익계약을 통해 대부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항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되어 있고, 「공항시설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설인력을 수용하기 위한 숙소·편의시설의 건설도 공항개발사업의 부대공사로 공항개발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건 폐교재산을 공항건설을 위한 관리사무소·숙소로 활용하려는 경우도 공익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해당되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8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상대방의 활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그런데 동 건의 경우 ① 폐교활용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폐교 재산을 교육용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 교육부도 이 건과 관련하여 폐교활용법은 폐교재산에 대해 기존 공유재산법 상의 대부 및 매각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공적 용도(교육, 문화체육 등)로 지역주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의견임

-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점
- ② 폐교재산인 ▷▷중학교는 '20. 3. 1. 폐교한 후 같은 해 3. 26.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변경된 이후 보존관리하기로 한 재산으로서
- * ○○군에서 주민 SOC시설(주민건강센터, 주차장) 확충을 위해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구체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교육지원청은 지가상승 예상을 이유로 보존관리 중
-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등으로 대부하는 등 폐교활용법 상 수의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폐교활용법을 우선적용하여야 하는데 이 건 교육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자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 ③ 공유재산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폐교재산을 일반경쟁에 의해 대부하는 경우 최고 입찰가에 의한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교육재정 수입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 ④ 일반입찰에 의해 대부하더라도 교육용시설 등의 용도를 우선 선정하되, 타용도로도 활용가능한 것으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 폐교활용법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교육용시설 등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에게도 입찰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어 폐교재산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
 - * 교육청은 입찰공고 시 당해 폐교재산의 탄력적인 대부를 위하여 당해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교육용시설 등으로 활용하지 않는 자도 대부받을 수 있도록 교육용시설 등을 우선선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음. 이 경우 교육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교육용시설 등으로 활용하지 않는 자도 낙찰받을 수 있음

⑤ 신청기관인 □□□□교육청도 폐교재산은 교육용시설 등에 활용하는 것이 「폐교활용법」의 제정 목적과 「2020년 폐교관리 기본계획」(’20년 4월) 수립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폐교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폐교재산 관리의 기본방향은 자체활용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되, 교육재정을 증대하고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교육지원청은 폐교활용법 제1조 및 공유재산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용시설 등의 용도를 우선선정하는 방법으로 입찰공고를 하여 교육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입찰에 참여한 교육용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됨

IV 종합 의견

○ 폐교활용법의 제정 취지 및 폐교재산은 교육용시설 등의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입찰에 의해 대부하여야 한다는 □□□□교육청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교육지원청은 폐교활용법 제1조 및 공유재산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용시설 등의 용도를 우선선정하는 방법으로 입찰공고를 하여 교육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입찰에 참여한 교육용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됨

- 다만 당해 폐교재산을 폐교활용법 상 교육용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없어 기타용도로 대부할 때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8호의 수의계약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일반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 가능

◁ 사전컨설팅 관련 적극행정면책기준 안내문 ▷

-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전컨설팅 의견은 귀 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위 사안에 국한하여 제공된 것이며, 위 업무처리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전컨설팅 의견서

신청일	2021. 3. 25.(보완신청일 2021. 4. 21.) [접수번호 21-016]
신청기관명	□□도
건명	도시철도건설사업 공동시행자 토지 지하보상 관련

I 업무 개요

- □□도는 국토교통부가 '13. 11. 20. ○○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선 복선전철 기본계획」(국토교통부 고시)을 고시하자 △△시, ○○시와 「○○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협약서」를 체결한 후
- '14. 8. 19. 국토교통부로부터 3공구 우선시공분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14. 9월 건설공사를 착공하는 등 위 건설사업을 추진
- 「도시철도법」 제2조 제7호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로 되어 있고
 -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 보조금을 법령·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 국토교통부는 ○○선 복선전철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교부조건으로 명시
-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15. 4. 1. 고시한 「○○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따르면 ○○선 □□도 구간(이하 “○○선”)의 사업시행자는 □□도지사 와 ○○시장으로 되어 있고,
 - * 국토교통부가 종래 고시한 「○○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사업계획 승인」(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선 사업시행자는 □□도지사였으나, 위 변경고시에 따라 ○○시장이 ○○선 공동사업시행자로 추가되었음
 - 「○○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협약서」 제5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선 사업비는 □□도와 ○○시가 각각 50%를 분담*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보상, 지장 노점상 이전·철거 등의 업무는 ○○시가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 이 건 ○○선 사업비의 70%를 국가가 보조하므로 실제 □□도와 ○○시는 사업비의 15%씩만 부담
- 한편, 국토교통부가 '15. 12. 31. 고시한 「○○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5차) 승인」(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선 ◆공구가 사업지역으로 추가되면서 ○○시청 부지(이하 “시청부지”) 일부의 지하가 지하사용 용지로 편입되었으나
 - * 「○○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6차) 승인」(□□도 고시)에 따라 ○○시청 지하사용 용지는 면적이 최종 확정
 - 보상업무 수행기관인 □□도시공사는 '16. 10. 21. 「○○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토지 등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시청 부지 지하부분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 ○○시는 '15. 6월 ○○선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도시공사에 위탁
- 그러자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를 근거로 ○○시청 부지는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 '19. 6. 24. □□도시공사에 보상금 2,208백만 원 및 감정평가 수수료 29백만 원 등 계 2,237백만 원을 청구하였고, □□도시공사는 '19. 6. 28. 보상금 등을 ○○시에 지급
- 이에 대해 □□도는 ○○시의 경우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도시철도건설자에 해당하여 시청부지 지하부분은 보상대상인 타인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 ○○시가 기수령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21. 3. 26. 신청 후 '21. 4. 21. 보완)

II 신청 요지

- □□도가 도시철도 건설사업 공동사업시행자인 ○○시가 기수령한 시청부지 지하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III 검토 결과

- □□도가 도시철도건설사업 공동사업시행자인 ○○시가 기수령한 시청부지 지하부분 사용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도시철도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

① 그런데 「도시철도법」 제2조 제7호와 제7조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로 되어 있고

- 「○○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사업계획변경 승인」(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선의 사업시행자는 □□도지사 및 ○○시장으로 되어 있어 ○○시도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도시철도건설자라는 점

② ○○시는 '14. 3월 □□도·△△시와 ○○선 복선전철 건설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 협약서 제5조 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선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제 도시철도건설자로서의 업무를 분담·수행하였다는 점

③ 「도시철도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자는 토지의 지하

부분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이전하도록 되고

- 협약서 제11조에 따르면 ○○선 준공과 동시에 ○○선 토지·구분지상권·시설물 일체가 ○○시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 도시철도건설자인 ○○시가 이 건 시청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해서만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민법」 제191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하도록 되어 있어 ○○시는 시청 부지 지하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하였음

▷ 도시철도건설 공동사업시행자인 ○○시는 지하사용 보상대상인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시청부지 지하부분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 □□도는 「도시철도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사용 보상금을 기수령한 ○○시로부터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법제처도 이건 관련, 「도시철도법」 제9조 제1항은 그 문언상 보상의 대상인 “타인”은 보상의 주체인 “도시철도건설자” 외의 자를 의미하는데, 「도시철도법」 제2조 제7호에서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도시철도건설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1인이 단독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2인(A지방자치단체와 B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도시철도건설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2인 모두 「도시철도법」 제9조 제1항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의견 제시

IV 종합 의견

○ 도시철도건설사업 공동사업시행자인 ○○시는 지하사용 보상대상인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시청부지 지하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4조, 그리고 「도시철도법」 제2조, 제7조, 제9조 등 관련규정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 사전컨설팅 관련 적극행정면책기준 안내문 ▷

-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전컨설팅 의견은 귀 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위 사안에 국한하여 제공된 것이며, 위 업무처리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전컨설팅 의견서

신 청 일	2020. 11. 12.(보완신청일 2020. 12. 30.) [접수번호 20-073]
신청 기관명	□□□도
건 명	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승인 신청 승인 관련

I 업무 개요

□ □□□도는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설·분양 중인 (주)△△△△으로부터 산업시설 등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에 대한 입주승인 신청 승인 여부를 검토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지리적으로 집중시켜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지역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조성된 용지로서 조성원가로 공급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제5조의3, 제5조의4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3조의4에 따르면 산·학·연 클러스터의 건축물 등을 양수하려는 자(이하 “양수인”)는 입주 승인신청서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입주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 입주목적·활용계획·자금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입주승인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시·도지사는 입주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 사업계획의 내용 등이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이하 “입주승인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조3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은 ① 사업계획의 내용이 종합발전계획에 적합할 것, ② 사업계획의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

- ③ 부지의 취득,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 ④ 그 밖에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 우선순위 등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할 것 등으로 되어 있음

○ 그리고 혁신도시법 제5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기관(이하 “양도인”)이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신고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이하 “양도신고”) 하도록 되어 있고

- 혁신도시법 제45조의3 제3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이를 분양하려는 경우 공급가격 등을 포함한 분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주)△△△△은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에 따라 '19. 8. 21. ◇◇시로부터 공급가격이 포함된 지식산업센터 분양공고안을 승인받아 분양모집 공고를 실시한 후 분양을 진행 중이며

-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혁신도시법 제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에 입주승인을 신청할 예정임

* 이 건 분양공고안은 ◇◇시로부터 승인받은 반면, 양도신고·입주승인 신청은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그런데 혁신도시법 제5조의4 제3항에 따르면 산·학·연 클러스터 건축물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은 해당 부지의 취득가격과 취득세 등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건축물의 경우 감정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 (주)△△△△이 산업집적법에 따라 ◇◇시로부터 승인받은 공급가격이 혁신도시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가격기준을 초과할 경우 혁신도시법 제5조의4 제1항에 따라 □□□도에 양도신고를 하더라도 반려 대상이어서 양도신고를 할 수 없는 실정*이며,

* 실제로 □□□도가 (주)△△△△에 수차례 양도신고를 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주)△△△△은 양도신고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고 있음

- □□□도는 (주)△△△△이 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수분양자에게 지식 산업센터를 양도하더라도 혁신도시법 제60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달리 제재할 방안이 없는 상황*

* 국토교통부도 혁신도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 등을 양도한 양도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양도신고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19. 1. 31.)이며, 다만 개별호실을 신고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신고의무 위반행위 각각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임(20. 9. 2)

○ 그리고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르면 입주승인 신청 제출서류에는 양도가격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 이 건 분양광고안은 ◇◇시가 승인하였기 때문에 □□□도는 개별호실의 분양가액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양수인에게 양도가격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도 없음

- □□□도는 (주)△△△△이 양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양도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 이러한 상황에서 수분양자가 입주승인을 신청할 경우 양도인의 양도 신고 의무 불이행 등을 사유로 수분양자의 입주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 이와 유사하게 ▽▽광역시는 ▽▽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은 양수인이 '18. 11. 21. ▽▽광역시에 혁신도시법 제5조의4 제2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신청*한데 대해
 - *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매입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건축주(양도인)는 혁신도시법 제5조의4 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양도
 - ▽▽광역시는 '19. 1. 31. 국토교통부로부터 양도인이 양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에 대해 입주승인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아 이를 근거로 '19년 3월 양수인의 입주승인 신청을 반려하였으나,
 - * 국토교통부는 '20. 9. 2 동일취지의 의견을 □□□도에도 회신하였음
 - 이와 관련, ▽▽지방법원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양도인의 양도신고는 양수인의 입주승인 신청과 별개의 절차로서 양도가격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입주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고 반려처분 취소판결

▽▽광역시 사례

- **(사건개요)** ▽▽광역시는 관내 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 양도인이 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분양을 한 데 대해
 - 혁신도시법에 따른 적절한 양도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류 등을 위 지식산업센터 양수인에게 요청하였으나
 - 양수인은 '18년 11월 혁신도시법에 따른 양도신고는 양도인의 의무로 되어 있어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해당 서류 등을 첨부하지 않고 ▽▽광역시에 입주승인 신청
 - 이에 ▽▽광역시가 '19년 1월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거쳐 '19년 3월 혁신도시법에 따른 적절한 양도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양수인들의 입주승인 신청을 반려하자
 - 양수인들은 '19년 6월 입주승인 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 **(재판결과)** ▽▽지방법원은 혁신도시 입주자에 대한 입주승인은 양도가격 신고와 별개의 절차로서 입주자는 입주승인 신청 시 양도인의 양도가격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 양도인에 대한 양도신고가 양수인의 입주승인의 선결조건에 해당하거나 입주승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광역시가 분양자들에게 관계 법령상 구비서류로 정하지 아니한 양도가격자료 제출을 요구한 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입주승인 신청을 반려한 것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위법하다고 판시(2019구합6424, '20. 1. 19.)
- **(진행상황)** ▽▽광역시는 1심 판결 후 국토교통부가 입주승인과 양도신고가 상호연계된 것이므로 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1심 판결이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없고 법 문언을 충실히 해석한 것이라는 정부법무공단(소송수행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항소 포기
 - * 정부법무공단은 입주승인 처분 지연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커질 경우 원고들의 손해배상 요구 및 그에 따른 실제 인용가능성도 증대될 수 있다는 의견 전달
 - 위 취소소송 외에도 양도인은 '20. 5. 19. ▽▽광역시 및 ▼구청을 대상으로 입주승인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20억 원)을 제기하여 진행 중

▷ 이에 □□□도는 양도인이 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지식산업센터를 양도할 경우 양도인에 대해 입주승인을 할 수 있는지 대해 법원 판례와 국토교통부 의견이 달라 법령해석 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로 우리 院에 사전컨설팅 신청(최초 '20. 11. 12., 보완 '20. 12. 30.)

II 신청 요지

- □□□도가 산·학·연 클러스터 내 지식산업센터를 양도하려는 자가 혁신도시법 제5조의4 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양수인이 양도가격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 혁신도시법 제5조의4 제2항에 따른 양수인의 입주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III 검토 결과

- 이 건 □□□도가 산·학·연 클러스터 내 지식산업센터를 양도하려는 자가 혁신도시법 제5조의4 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양수인이 양도가격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양수인의 혁신도시법 제5조의4 제2항에 따른 입주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면
 - 혁신도시법 제5조의3, 제5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3조의4에 따르면 산·학·연 클러스터의 건축물을 양수하려는 양수인은 입주승인신청서, 입주목적·활용계획·자금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입주승인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입주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 시·도지사는 입주승인 신청이 입주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하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혁신도시법 제5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산·학·연 클러스터 양도인이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신고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이 건 □□□도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양도인이 양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양수인의 입주승인 신청을 승인하려는 것으로서
 - ①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르면 입주승인기준은 사업계획의 내용이 종합발전계획 및 관계법령에 적합할 것, 자금조달능력을 갖추 것 등으로 되어 있어

- 현행법령 상 양도인의 양도신고 여부, 양도가격 적정성 여부는 입주 승인기준이 아니라는 점
- ② 혁신도시법 상 양도가격 신고는 양도인에게 부과한 의무로서 양도인이 양도신고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양수인의 입주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 법치행정의 원칙 상 양도가격 신고의무가 없는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양도가격 신고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입주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는 점
 - * ▽▽지방법원은 양도가격 신고와 입주승인 신청은 입법취지가 다른 별개의 제도로서 양도 신고 수리가 입주승인 신청의 선결조건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광역시가 양도인의 양도신고를 반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고 판시(20. 1. 9.)
- ③ '15. 12. 29.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입주승인제도는 산·학·연 클러스터 건축물 등이 클러스터 조성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여 이전 공공기관과 산·학·연 클러스터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 * 국회 혁신도시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종래 법령에는 입주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에 해당하지만 하면 이전공공기관과 관계없이 입주를 허용하여 혁신도시를 특화된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입주심사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가 입주를 승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혁신도시법 체계상 입주승인과 양도신고는 별개의 제도이며 양도 신고의 수리는 입주승인의 선결조건이 아니라는 점
 - * 법제처는 이 건과 관련하여, 입주승인 제도는 산·학·연 클러스터의 부지·시설 및 건축물이 클러스터 조성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여 이전 공공기관과 산·학·연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도신고 및 양도가격 제한을 통해 혁신도시 지정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을 막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혁신도시법 제5조의4 규정과는 별개의 제도이며, 양도신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입주승인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입주승인기준

및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등의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20. 12. 31.)

[표] 입주승인 및 양도신고

구분	입주승인	양도신고
근거규정	혁신도시법 제5조의3 및 제5조의4②	혁신도시법 제5조의4①
신고의무자	양수인	양도인
제출서류	입주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승인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신고서, 양도사유서, 양도가격 산출근거 서류, 양도사항 증명서류
심사(수리) 기준	입주목적의 적합성을 고려한 입주승인기준 충족 여부 - 사업계획의 내용이 종합발전계획에 적합할 것 - 사업계획의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 - 부지의 취득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 그 밖에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 우선순위 등 사·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할 것	양도가격의 제한기준 충족 여부 - 부지 : 취득가격×생산자물가상승률 + 취득세 등 부지매입비용 - 건축물 : 감정평가금액

④ 혁신도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양도신고서 서식”에 따르면 양도인은 양도신고 시 양수인의 입주승인 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오히려 양도신고 수리 없이도 입주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

* 혁신도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양도신고서”에 따르면 양도인은 양수인의 성명·사업자명·주소 등 인적사항과 “입주승인 여부”를 “유/무”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⑤ 양도가격자료는 혁신도시법 제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 열거하고 있는 양수인이 입주승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에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 혁신도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입주승인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외에 입주목적, 사업분야, 입주예정부지의 위치·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건축물등의 활용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양수가격 등의 가격 관련 자료는 기재하는 란이 없음

- □□□도는 양수인에게 양도가격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양수인도 양도가격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점

⑥ 국토교통부가 양도가격 제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혁신도시법 상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국토교통부는 이 건과 관련하여, 양도가격 제한의 입법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주승인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양도가격 위반 시 입주승인을 불허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의견 제시(21. 1. 26.)

▷ 신청기관 의견과 같이 양도자의 양도신고의무 미이행 또는 양수인의 양도가격자료 미제출을 사유로 입주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고 사료됨

* 법제처는 이 건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양도인에게 주어진 양도신고의무 및 양도가격 제한 준수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자의 입주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20. 12. 31.)

IV 종합 의견

○ 이 건 양도자의 양도신고의무 미이행 또는 양수인의 양도가격자료 미제출을 사유로 양수인의 입주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제5조의4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3조의4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 사전컨설팅 관련 적극행정면책기준 안내문 ◁

■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전컨설팅 의견은 귀 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위 사안에 국한하여 제공된 것이며, 위 업무처리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업무위탁을 위한 예산전용 관련](#)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업체 손실보상 관련](#)

[상생소비지원금 지원사업 관련](#)

자체감사기구 사전컨설팅 처리사례

~22. 6. 6.

경관조명 설치공사 위탁 관련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19-48	신청기관 (부서명)	○○시(□□과)		
건 명	○○ ●●● ●●●공원 조성사업 경관 조명 설치공사 위탁	분야	세부분야	처 리	
		사업	계약	의견제시	

<p>1. 컨설팅 개요(추진일정 등)</p> <p>□ 사업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 ●●● ●●●공원 조성사업 경관조명 설치공사 ○ 위치 : ★★ 공유수면 인접 해안도로 9.4km 일원 ○ 사업내용 : ♠♠대교, ♣♣IC 접속교, @@@대교 접속교, ◀대교, 가로등 경관조명 설치 ○ 사업비 : 7,●●●백만 원(시비 100%) ○ 추진방법 : 전문기관 위탁(한국◇◇◇진흥회) <p>□ 지금까지 추진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교 해변관광 기본계획(안) 시의회 1차 간담회 : '19. 00. 00. ○ @@@대교 해변관광 기본계획, 경관조명(안) 주민공청회 : '19. 00. 00. ○ 기본계획, 경관조명(안) 소 토론회 : '19. 00. 00. ○ 시의회 2차 간담회 및 직원대상 설명회 : '19. 00. 00. ○ ○○시 관광개발사업 콘텐츠 보고회 : '19. 00. 00. ○ 기본계획, 경관조명(안) 보고회 : '19. 00. 00. ○ 경관조명 설치사업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 '19. 00. 00.
<p>2. 주요내용(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조명 설치공사 관련 계약사무, 설계검토, 조명자재의 품질, 시공, 자재 검수 등 사업 전반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려고 할 때 위탁업체 선정 방법 및 협약서(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를 의뢰하였음.

< 주요 검토사항 >

○ **위탁 전문기관 선정방법의 적정성**

- 한국◇◇◇진흥회는 당초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 전문 특수법인 이었으나 관련법이 개정되어 2016. 3. 「민법」에 따른 단체로 통합됨.
- 해당 법인 정관에 ①◇◇◇ 발전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 사업, ②원가계산의 적정성 검토 업무가 법인사업으로 규정됨.
- 경관조명사업 위탁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6개 기관에 사업 추진실적 및 중점사업, 인력구성, 수수료 요율에 대해 비교검토 결과 해당기관으로 결정

○ **위탁의 범위 적정성**

- 기획과정 : 설계 검토(설계는 별도로 추진)
- 사업과정 : 사업자선정(입찰공고), 계약체결지원, 제품검증, 시공관리 및 지원, 검수 시 현장 검토
- 사후과정 : 하자보수 기간 중 업무지원

3. 신청기관 의견

- 해안도로 9.4km 일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공사로 설계검토, 조명자재 품질 확인, 자재검수 등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4. 검토 의견서

□ **검토내용**

-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계약사무 위탁은 계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것(입찰공고, 원가계산 등)을 계약이나 회계 등의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함.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4호에 따른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2관 원가검토기관]을 갖춘 기관으로 원가계산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계약사무의 위탁만 가능함.
- 실질적인 사업은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의 종류에 따라 해당 계약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 계약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결론

- 계약사무의 위탁이란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개별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함.
- 이 건 경관조명 설치공사의 위탁의 경우는 개별 계약사무 만이 아닌 시공, 물품검수, 감리, 하자보수 지원 등 실제 발주기관에서 추진해야할 사업 전반을 위탁하는 것으로, 이는 계약사무의 위탁이 아닌 사업의 위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사업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에 해당 기관이 지자체의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나, 한국◇◇◇진흥원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써 이에 해당되지 않음.
- 또한, 계약사무의 위탁의 경우에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4호에 따라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 사무에 대해서만 위탁할 수 있으므로, 시공(공사), 감리(용역), 자재납품 및 검수(물품)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위탁은 불가하다고 판단됨.

※ 붙임 : 관련법규 검토

※ 관련법규 검토

○ 「지방계약법」 제7조 규정에 따르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사무의 위임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계약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사무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를 위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3.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 라.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전문기관에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⑦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하여 보증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7절 제2관에 따르면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43호, 2019. 8. 12.)」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함.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자문·권고 등을 하는 것(이하 "적극행정 지원사무"라 한다)

-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것(이하 "법령등 해석사무"라 한다)
-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것

○ 「전라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전라남도지사훈령 제1422호, 2019. 9. 19.)」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지사가 신청기관의 신청을 받아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각 호는 위 총리령과 같음.
- 신청기관의 장이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감사를 면제할 수 있음.

※ 본 의견서는 적극행정 지원 측면에서 신청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조언·자문·권고 사항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음.

재워이 다른 예산의 통합발주 관련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0 - 25	신청기관 (부서명)	○○군(□□□□과)	
건 명	재원(국비,지방비)이 다른 예산의 통합발주 가능 여부	분야	세부 분야	처 리
		사업	계약	의견제시

1. 컨설팅 개요(추진일정 등)

□ 사업 개요

구 분	★★-○○교차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사업내 용	○○군 군계획시설 대로 3-1호선 (도로 L=398m, B=25m)	회전교차로 1개소 (1차로형, D=27m)
사업비 (백만원)	4,000(군 4,000)	280(군 140, 군 140)
위 치	전남 ○○군 ○○읍 ○○리 449-1번지 일원	전남 ○○군 ○○읍 ♣♣리 ★★사거리
사업기간	2019. 8. ~ 2021. 12.	2020. 5. ~ 2021. 12.
추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설계용역 착공 : 2019. 11. 18. • 보상계획 열람공고 : 2020. 1. 20. • 실시계획 사전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공고 : 2020. 2. 13. •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20. 3. 19. •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0. 3.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성 검토 및 회전교차로 설치 타당성 검토(도로교통공단) 협의(1차) : 2020. 1. 20. • 회전교차로 조성 실시설계(안) 기술지원(도로교통공단)요청 협의(2차) : 2020. 3. 4.
비 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행정안전부)

2. 주요내용(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포함)

□ 신청사유

- 2020년 행안부 보조(균특)사업인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과 군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주요내용) 현재 차로폭 3.0m 왕복 2차로 도로를 도로폭 25m 왕복 4차로 도로로 확·포장 구간 시점부 ★★사거리(신호교차로)의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자문 결과 차량흐름 및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실시설계용역에 반영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주요쟁점

< 대립되는 의견 >

- (갑론) 교통광장과 도로는 별도 군계획시설로 결정 되어 있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행정안전부 국고 보조사업인 반면 도로개설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예산관리 및 사업비 정산을 위해 분리발주함이 타당
- (을론) 회전교차로 설치 위치가 도로 확포장 구간의 시점부로 지장물 철거 및 4차로 도로를 확장해야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하고, 전체 공사일정, 공사 혼잡 및 하자 불분명의 사유가 지방계약법상의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며, 발주 시기가 같고 공사 안전시설물 설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간접공사비의 중복투자 등이 예상되므로 사업 추진 및 예산 절감을 위해 1건 공사로 통합 발주함이 타당

3. 신청기관 의견

-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일구조물공사이므로 공사시행의 효율성, 경제성, 하자책임의 명확성을 위하여 **통합발주** 하는 것이 타당함

4. 검토 의견서

□ 검토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 5. 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동일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령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 4.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의 집행에 따르면, “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 귀 군에서 개설하고자 하는 회전교차로는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일체식 구조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 한편, 공사의 혼잡 및 하자 불분명의 사유로 지방계약법상의 수의계약 여건에 해당된다는 의견(을론)에 대해서는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나, 장애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불분명하거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공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존 계약 상대방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에 따르면 도로포장, 도로개설 등은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수의계약 제외대상임.
 - 따라서,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 결론

- 신청기관이 추진하려고하는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2020. 7. 1.)를 대비하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고, 도로개설 구간 내 회전교차로를 동시에 설치하여 원활한 차량흐름과 교통사고 저감 등을 통해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민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위치가 도로 확포장 구간의 시점부로 4차로 도로를 확장해야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한 실정임.
-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에 따르면 도로포장, 도로개설 등은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수의계약 제외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귀 군에서 교통안전성 향상과 주민편의 증진이라는 당초 사업 계획의 취지와 두 사업의 연계성 확보, 설계내용, 현장상황(교통 통제 최소화 등), 공기단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사업이 통합발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 후 공사 계약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공개입찰을 통한 업체선정, 자원별 효율적 예산관리와 명확한 사업비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붙임 : 관련법규 검토

※ 관련법규 검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¹⁾」 제9조(계약의 방법)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규정에 따르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이하 “지방계약법”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8.) 규정에 따르면

4.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 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

- 1) “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 (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를 준용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등록·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분할계약의 금지

가.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아래의 공사

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다)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작업 위치)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나”에 따른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 10. 8.) 규정에 따르면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공사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1)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축제·하천호안·도로포장·도로개설·상·하수도 접합·조경·토공·준설과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 ▪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2) 작업상 혼잡 등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차공사기간 대비 전차공사 잔여공사기간 비율이 40% 미만인 공사
3) 마감공사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옹벽·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추정금액이 2억 원 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2분의1 미만인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감공사 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추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 원 이상인 공사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4) 특허공법·신 기술·새로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 「환경기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전력기술 공사 등으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 공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장·고시된 방재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자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64호, 2016. 4. 29.)」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함.
 - 1)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자문·권고 등을 하는 것(이하 “적극행정 지원사무”라 한다)
 - 2)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것(이하 “법령등 해석사무”라 한다)
 - 3)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것

○ 「전라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전라남도지사훈령 제1369호, 2016. 10. 27.)」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지사가 신청기관의 신청을 받아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각 호는 위 총리령과 같음.
- 신청기관의 장이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감사를 면제할 수 있음.

※ 본 의견서는 적극행정 지원 측면에서 신청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조언·자문·권고 사항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음.

근린공원 내 광역 클린하우스 설치 관련

4 근린공원에 광역 클린하우스 설치 가능 여부

컨설팅 요청내용

- ▶ ○○시 ○○동 공원 부지 내에 “준 광역 클린하우스(80~100㎡)” 를 설치하고자 함
- ▶ 「○○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에 따라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공원점용허가를 받고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에 따라 쓰레기처리장, 쓰레기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관리에 필요한 시설로 분류되는 공원시설이므로 공원 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설치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컨설팅감사 요청

관련 법령

- 「○○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쟁점 사항 (관련부서 의견)

- 준 광역 클린하우스 설치가 「○○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 제3항 제17호에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허가부서는 준 광역 클린하우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쓰레기처리장, 쓰레기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은 공원관리에 필요한 시설로 분류되는 공원시설이므로 공원 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설치가능하다는 의견임

컨설팅 감사결과

- 공원녹지법 제24조 제1항은 도시공원 내에서는 공원시설 외의 시설물 설치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점용허가를 받으면 제한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공원에는 ‘공원시설’ 만 설치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공원녹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공원 시설의 종류로 “쓰레기처리장” 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공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원 외부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가 주목적인 “준 광역 클린하우스” 시설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또한, 「○○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창고시설” 과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 을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으로 하고는 있으나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562호) 에 따르면 창고시설의 경우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준 광역 클린하우스는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더라도 근린 공원에 설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보세화물 조기 폐기 관련

사전컨설팅 의견서

신청일	2019. 12. 9. (접수일 2019. 12. 9.)
신청기관명	OO세관
건명	불매운동에 따른 보세화물 조기 폐기 가능 여부

I 업무 개요

-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관련하여 일본 맥주(일본 소유 타국 브랜드 포함) 판매가 급감하였으며, 유통망에서도 인수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수입업체는 정상적인 유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유통기한 도래 전 폐기 희망(12천톤)

II 신청 요지

- 유통기한 미경과 수입 맥주에 대하여 불매운동 특수성을 감안하여 폐기 조건을 완화하여 폐기승인 하는 것이 적극행정에 부합되는지 여부

III 검토 결과

- '19.6월 법제처에서 발행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엄격해석(행정편의적 해석)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 바,
 - '불매운동'이라는 수입업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판매 가능성이 희박한 점이 인정되고,

- 국고귀속 수탁판매기관은 '잔여 유통기한 8개월 미만'은 인수불가를 밝혔고, 수입업체들은 '잔여 유통기한 6개월 미만'은 유통업체가 인수를 거절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므로,
- 고시 제25조 제1호의 '~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의 해석에 있어 실용시효의 경과를 상품가치 상실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예시로 들고 있는 바, 맥주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를 상품가치 상실에 대한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며,
- 본 사안의 처한 상황과 유통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사실상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로 해석 가능함

- 또한, 사실상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을 폐기승인하는 것은 무분별한 폐기 방지를 통한 조세채권 확보라는 고시 취지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으며,
- 물품 특성상 반송이나 제3국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폐기를 미룰 시 업체의 보관료 부담이 가중됨

IV 종합 의견

- 잔여 유통기한 6개월 미만 맥주에 대한 폐기승인이 타당 의견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검토 기관	00부 (감사담당관)
건 명	접도구역 해지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 주요 내용

- □□군에서는 도로공사로 인해 ○○ 면소재지 상가 및 주택 33동이 편입됨에 따라 주민 생계수단인 상권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민 중임

<지역 상황>

- ▶ ○○면은 산나물, 버섯 등 산림자원이 풍부하여 매년 자연산버섯축제를 개최
- ▶ 양수발전소* 건립 시, 기존 자연환경과 연계된 관광객 증가를 기대
 - * 2019년 신규건설사업 유치 1순위지(8,300억원)로 선정

<도로공사 개요 >

- ▶ 공 사 명 : ○○-○○ 도로건설(국지도 00호선)
- ▶ 위 치 : ○○군 ○○면 ○○리 - □□ □□시 ○○면 ○○리
- ▶ 사업규모 : L=16.9km(1공구 9.2km, 2공구 7.7km)
- ▶ 사업기간 : 2019. 6. - 2024. 8.
- ▶ 총사업비 : 87,005백만원
- ▶ 발 주 형 : □□□□



□ 신청 사유

- 주민들은 도로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상가 등 재건축을 원하고 있으나,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이용의 제한을 받게됨
 - * □□□도 고시 제2019-000호(0000. 0. 00)로 고시 / 도로경계선 양측 각각 50m 범위
- 면소재지의 상권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접도구역을 해지하고, 건폐율과 용적을 제고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생산관리→계획관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함

□ 검토 내용

가. 접도구역 해지 방안*에 대하여

-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등을 위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의 규정되어 있고,
 -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접도구역에서는 토지형질 변경과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
-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르면 취락지구* 내의 도로 등은 접도구역 지정 예외 사유에 해당
 - *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예정)되고 있는 지역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
- 관계기관 협의 결과, 도로관리청(□□□도)은 자연취락지구 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전체구간(L=16.9km)의 접도구역을 해제예정

<관계기관(□□□도, ○○군, 합동감사단) 협의 결과, '20. 2. 28.>

- ▶ 지역주민의 상권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공사 전 구간(L=16.9km)의 자연취락지구*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접도구역을 해지 예정
- □□도에서는 공사감리단을 통해 해당필지 조사에 착수 함

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 「국토계획법」 34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군 관리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 (성격)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서, 용도지역 등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계획
- 도지사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사항을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입안권자(○□군수)는 기초조사, 의견 청취(주민·의회) 등 관리 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주민 숙원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검토 필요

독립공원 조성이라는 사업에 대해 2개 기관의 각각 공사 발주 관련

발간물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발간물 1" (감사원) 참조

모범사례 포상 제도

제도 개요

모범사례 포상 제도란?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한 자세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국민 편익과 행정 능력을 높이는데 앞장서는 모범공직자와 모범부서·기관을 격려하고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모범사례 유형

행정능력 향상	국가·지방재정 확충 및 효율화	국민편익 증진 및 불편해소	경제 활성화	성실·헌신적 업무 수행
업무절차 개선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 업무시스템 구축·개선	예산절감 세수확보 재정누수 방지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민 재산권 보호 불합리한 규제 개선 범죄 등으로부터 피해 예방 재난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회적 갈등 해소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수익창출 국위선양	헌신적·적극적 업무수행 근무실적 탁월

모범사례 선정 요건

모범공직자

국가관·공직관·사명감이 투철하고 청렴·정직·성실하여 다른 공직자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서

행정능력 향상 또는 예산절감 방안 등을 제안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와 사회의 이익·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사례

2022년

러시아 이민등록법 개정예 적극,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국민의 안정적인 거주여건 확보에 기여

외교부/주러시아대사관 영사과

적극적인 전신주 이설사업 추진으로 주민 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재무과 재산관리팀

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 유지에 기여

대구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

기관 간 적극적 업무협의로 예산절감 등에 기여

국가철도공단/영남본부 동해남부사업단 전철전력PM부

생태도서의 목자, 점자 등 변환을 통한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국립생태원/지식문화부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 제정 및 운용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 감소에 기여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정책과

맞춤형 액비지원사업으로 경축순환 활성화 등에 기여

강원도 철원군/농업기술센터 축산과

X-ray 위험물 판별기술 개발로 국민 안전증진에 기여

대통령경호처/경호안전교육원

어업재해복구 지원항목 신설을 통해 피해어민 지원 확대에 기여

경상남도/김지수

우정사업기반망 통신장비 구조개선으로 예산절감에 기여

우정사업본부/윤성종

챗봇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의식 제고 및 효율적 관리

한국농어촌공사/충남지역본부/임원일

국내 최초 가상자산 관련 채권 압류를 통해 세수 확보에 기여

국세청/황병광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들의 퇴직금 체불 문제해결을 지원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고연주

2020년

건축 인·허가 처리기준을 개선하여 민원인 불편해소 등에 기여

건축 인·허가 처리기준을 개선하여 민원인 불편 해소 등에 기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건축지과는 2017. 9. 28. 그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서로 다르게 운영해오던 건축 인·허가 절차를 통일하게 준비하는 내용의 「건축 인·허가 처리기준 통일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시행하였다.

2006. 2.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종전 제주시·서귀포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되었으며

1) 4개의 지방자치단체(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가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되면서 조례 제정권 등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기능도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되었고, 제주시의 서귀포시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로 기능하게 되었음

나, 건축행정 업무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단위로 각각 행정체계 통합 전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주택법」 제49조 제2항 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시 제주시는 현장조사·감사 및 확인업무 중 일부는 건축사가 대행한 대행검사를 인정해주고 있었으나, 서귀포시는 사업계획 승인부서에서 직접 사용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축사에 의한 대행검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건축주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을 착공신고 하는 경우 제주시는 허가조건사항에 대한 감리자의 확인서류, 서귀포시는 경제측량성과도를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를 비롯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건축 인·허가 처리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것 외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관행도 있었다.

한편 2014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내 건축허가 신청건수가 2014년 5,902건(3.4백만㎡)에서 2016년 9,616건(4.7백만㎡)으로 급증하는 등 개발수요가 증가하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건축 인·허가 처리기준과 절차가 달라 민원인의 혼선이 초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는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존 마련을 위한 과정에 착수하였다.

구체적으로 건축지적과는 2017. 6. 26. 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이하 「제주도건축사회」라 한다) 임원들로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동일한 내용으로 건축 인·허가 관련 지침을 운용할 것과 건축 인·허가 지침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은 후, 다음 날인 6. 27. 「두 행정시의 실태를 파악하여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제주도건축사회 임원과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조차계획을 도지사에 보고하였다.

2) 구 「제주도 행정체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내 4개 시·군·자치단체가 통합되어 행정시로 운영되는 지역이 상설되지 않고는 하는 불이행 배제의 원칙을 두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규정 조례」 제30조 제3항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기존에 수행하던 건축허가 등의 업무 중 그대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 승인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 부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건물용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요건을 발생시키는 행정차별법

그리고 건축지적과는 2017. 7. 10. 제주도건축사회로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에 건축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등이 서로 다르게 요구되고 있는 사례와 구체적인 개선요구 사항을 제출받아 같은 해 7. 26.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이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건축사회 간담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간담회

그 후 건축지적과는 2017. 9. 1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이 주재하는 "두-행정시 건축 부서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건축과장과 주택과장이 참석할 자리에서 건축 인·허가 처리기준 개선안 내용을 조율한 뒤, 같은 해 9. 28. 관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두 행정시 간에 서로 달랐던 기준을 일원화 하는 내용의 「건축 인·허가 처리기준 통일을 위한 개선안」을 확정·시행하였다.

위 개선안이 시행된 이후 서귀포시의 경우 건축을 착공신고 시 측량성과도 제출 의무가 폐지되어 건축주들은 건축 착공 건당 부담해오던 평균 175만 원의 측량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2018년 6월까지 건축 착공건수(계 1,547건) 기준으로 건축주들의 건축비 계 27억 725만 원 상당의 경감효과가 있었고, 측량성과도를 비롯하여 제출할 서류를 줄여줌으로써 사진 측량 등에 소요 되는 기간이 약 10일 단축되는 등 건축 민원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나타났다.

또한 제주시의 경우 건축을 착공신고 시 감리자 허가조건사항 확인서, 감리자 검사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됨으로써 평균 착공신고 처리기간이 1,331일 단축(4,291일 → 2,962일)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한편 「건축 인·허가 처리기준 통일을 위한 개선안」 시행 이후 건축지적과가 2017. 12. 15. 제주도건축사회 임원 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개선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매우만족, 만족 66%)으로 나타났다며 개선효과가 있었다는 응답도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원 한마디

과장으로서 우리 직원들과 화합하고 소통하여 함께 하는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노력이나 직원들이 믿고 잘 따라와 준 덕분에 우리 부서가 모범부서가 선정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에게 업무 선배로서 뿐만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많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과장 김승현

많은 바 업무에 늘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보내고 싶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조직의 디딤돌과 주춧돌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저 또한 동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 잘 되는 부서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팀장 임창현

과장님이 방향을 제시하고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토론을 거쳐서 과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이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사士를 내기 때문에 모범부서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서에 누가 되지 않게 제도 더욱 더 분발하겠습니다. 모두들 cheer up!

주무관 한은지

과 사무로서 사무실의 소통과 분위기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좋은 과제 분위기를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직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건축지적과 직원들과 함께 협업하여 모범부서에 걸맞는 부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무관 김용미

우리 과 막내로 사회생활이 전부였던 사회초년생인 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잘 알려주시고 행정수서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팀원분들 모두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앞에서 지켜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과 팀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많은 바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주무관 김혜인



▲ 건축지침과 직원들

건축 허가는 「건축법」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수도법」, 「하수도법」 등 수십여 개의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복잡민원으로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 및 인·허가 여부의 명확한 예측이 곤란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은 업무입니다.

때문에 민원처리에 있어서 투명한 처리 절차와 일관된 법 적용이 어느 민원업무보다도 중요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 후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4개 시·군으로 나누어졌던 기초자치단체가 도와 2개의 행정시로 재정이 되면서 민원 처리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치가 타시도에 비해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외국자본에 의한 대규모 개발, 제주로의 이주 열풍에 의한 인구 증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건축허가 건수가 크게 급증하면서 건축부서의 업무량이 폭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민원인들의 불만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일한 건축인허가 민원에 대해 양 행정시의 처리기준이 상이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지침 시행 등으로 건축주, 건축사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축인허가 처리와 관련한 민원이 민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도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2017년 6월에 행정시 건축인허가 처리기준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실태파악 결과, 건축물 착공신고 절차, 사용승인 처리기준, 개발행위허가 절차 등 행정시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규제되고 있는 사례 6건을 파악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 관련단체 간담회, 도·행정시 합동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집회회신 사례 및 법령 분석 등을 통해 2017년 9월 "건축인허가 처리기준 통일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선안 시행으로 시귀포시의 경우 착공신고, 경계측량 및 토지분할에 따른 비용경감과 사전 측량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감축되는 효과를 얻었고, 제주시의 경우 이전 보다 착공신고 처리일이 평균 1.3일이 빨라지는 효과를 얻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오던 행정편의 위주의 불합리한 민원절차를 행정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개선하였다는 데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 용어 중에 '텔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처럼 행정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도 제도와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행하는 균형감각을 갖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건축지침과 오 창 훈



농어촌 취약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로 출산환경 개선에 기여

농어촌 취약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로 출산환경 개선에 기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는 도시지역 및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출산 환경을 개선하여 아이 낳기 좋은 전라남도를 실현하기 위해 2014. 8. 12. 2018년까지 공공산후조리원 4개소를 설치하는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2015. 9. 1. 해남군에 위치한 해남병원에서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개원한 뒤 2017. 7. 21.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강진군에 위치한 강진의료원에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완료하고 2017년 말까지 2호점을 개원하기 위해 건축허가 등 행정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2013년 전라남도의 출생아 수는 15,401명이었지만 산모가 이용할 수 있는 민간산후조리원은 2014년 7월 기준으로 4개 시에만 7개소(목포시 2개소, 여수시 2개소, 순천시 2개소, 광양시 1개소)가 있어 민간산후조리원 있는 4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18개 시·군의 산모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목포시 등 4개 시나 광주광역시 등 인근 대도시로 원정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사업³⁾이 있었으나 이 또한 2014년 7월 기준으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8개 시·군에 11개소(목포시 2개소, 여수시 1개소, 순천시 3개소, 나주시 1개소, 광양시 1개소, 장흥군 1개소, 화순군 1개소, 해남군 1개소)의 서비스 기관만 있는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리적 여건상 교동이 불편하고, 인력 확보가 어려운 도시지역 및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산모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과는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기에는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더라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산모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우려⁴⁾가 있어 특정 시·군이 아닌 전라남도 모든 시·군의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14. 8. 12.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가 주체가 되어 2018년까지 출산·분만 취약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4개소를 설치·운영하는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과 같은 사회복지장제도 신설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사회복지과는 2014. 8. 27.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였으나 2014. 10. 2.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의 신청이 집단관리로 인한 감염·질병의 우려 등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보다는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사업 확대를 권고하는 발송용 통보를 받았다.

이에 사회복지과는 2014. 10. 13. 보건복지부에 추가 협의를 요청하는 등 보건복지부를 3차례 방문하여 전라남도가 7년 연속 출산율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라남도의 지리적 특성상 농어촌지역과 도서지역 등 분산시설 낙후 지역이 많아 임신부들이 산부인과 이용에 어려움이 많고, 민간산후조리원에 부족하여 대도시로 원정 출산하는 현실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다.

관련 사회복지과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장제도 신설협의를 추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1) 출산장제도 건강관리서비스를 피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소요비용의 80%를 국고보조금 및 도·시·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아간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이동거리가 멀거나 교통수단이 불편한 도서지역 및 농어촌지역은 도우미간담관리서비스가 기대하여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2) 타 지역민 이용 시 이동료 관련 혜택이 없어, 해당 기초자치단체 주민만 이용할 가능성이 큼

시가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을 방문하여 설치장소, 내부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벤치마킹한 후 2014. 10. 10.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운영, 예산지원, 서비스 이용료, 이용료 감면대상, 감면 이용료 보전 등을 규정하는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2014. 11. 28.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책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2차 협의의 결과를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경우 산부인과 또는 소아과가 있는 병원에 설치하여 민간위탁함으로써 신청이 집단관리로 인한 감염 및 질병의 우려를 해소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산모가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기존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⁵⁾보다 더 저렴해 줌으로써 농어촌지역과 도서지역 등 분산시설 낙후 지역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절감하겠다는 등의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여 2014. 12. 9.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협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통보받았다.

이후 사회복지과는 2015. 1. 30. 해남병원과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한 후 총사업비 964백만 원(도비 500백만 원, 자부담 464백만 원)을 투입하여 병원 4층에 150명 규모로 산모실 10실(일반실 9실, 장애인실모실 1실)과 모자동실 등을 설치하였고, 2015. 9. 1.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후 산후 회복을 돕는 산모 요가, 웃음치료 등 산후조리원 힐링 프로그램과 아기 목욕시키기, 모유수유 강의, 이유식 만들기 등 산모와 신생아 돌봄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감염원 차단을 위한 예아워부모, 신생아 격리 관찰실, 공기정화기 설치 및 외부인 출입차단, 종사자 검진 등을 통해 신생아의 감염 및 질병 예방을 위해 관리하고 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산후조리원(송파구민 190명, 월14일 사용, 송파구민에 한하여 20~30% 이용료 지원, 타 지역민 20만 원, 충청남도 홍성군 공공산후조리원 2017. 7. 21. 현재 세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 154명, 월14일 사용, 50% 이용료 지원)
4) 설치비 5억 원 전체 도비 지원, 사업실제 후 시설비 추가 비용은 병원 측에서 부담, 운영비는 인건비 10명(간호사 4명, 간호조무사 4명, 세탁부·조리원 2명)에 대하여 연간 180백만 원을 전라남도 50%, 해남군 50% 지원



그 결과 2015. 9. 1.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 개원 시부터 2016년 말까지 총 354명(감면대상자 220명, 62%)의 산모가 이용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월평균예약대기자 28.75명)이고 있는 등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부서원 한마디



국장 중 석

지출금 문제는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첫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삶이 바뀌는 행복한 전남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한 공공산후조리원이 출산복지의 선도모델로 인정받아 우리 부서가 감사원으로부터 모범부서로 선정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지책을 추진해 아이낳기 좋은 전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과장 이 중 병



팀장 김 희 승

전남공공산후조리원의 성공비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직원부터 도지사님까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 일하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열에서 지켜봐왔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험난한 여정을 이겨낸 정말 대단한 결과물입니다. 이를 계기로 전남의 인구가 더욱 늘어날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 규 준



주무관 신 흥 현

가끔 다른 시·도에 사는 민원인으로부터 전남공공산후조리원은 전남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냐며 부럽다는 전화를 받고는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터뷰

전남은 출생아 수 감소로 문 닫는 산부인과가 늘어나 분만은 물론 산후 조리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놓여온 산모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계획을 세웠지만 법과 제도적인 문제로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간 광역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한 전례가 없어 관련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고 산생아 집단감염 등의 문제로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랄까, 분만 취약 지역이 많은 우리 도 산모들이 도시로 원정출산, 원정 산후조리를 떠나는 전남의 현실과 상황에 대해 도지사님까지 나서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설명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열악한 농어촌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계획을 승인받고, 지난 2015년 1호점을 해남군에 개원하였습니다.

이후 산후조리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올해 5월 2호점을 강진에 설치하였고, 현재는 3호점을 원도, 4호점을 나주에 설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에는 사회복지기업을 발굴해 산모의 건강회복과 전문적인 산모교육을 제공하는 등 양질의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출산전환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지책을 추진해 아이낳기 좋은 전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글.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장 이 장 범



무차단 교량 신축이음장치 점검기법 개발로 유지관리 업무 개선에 기여

한국도로공사
김인배 선임연구원

무차단 교량 신축이음장치 점검기법 개발로 유지관리 업무 개선에 기여



김인배 선임연구원은 2015. 6. 8.부터 2018. 5. 9. 현재까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구조물연구실에서 교량 등 구조물에 대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량 신축이음장치(이하 "신축이음장치"라 한다)는 온도변화에 따른 교량의 신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교량 바닥판에 설치하는 것으로, 2018년 5월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 중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된 교량은 6,512개이고, 해당 교량에 총 16,580개의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신축이음 간격이 적정간격보다 부족하거나 협착이 발생하면 교량 구조물의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제한하여 교량 바닥판, 커터(Girder) 및 교량 받침이 손상되므로 신축이음의 적정간

1) 교량의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보(梁)

한국도로공사 연구개발팀

격 확보 여부는 교량을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는 신축이음장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2회 육안으로 신축이음장치 파손상태 및 신축이음 간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신축이음장치 각각에 대하여 2~3년 주기로 신축이음 간격을 상세하게 측정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신축이음 간격이 적정간격보다 부족하거나 신축이음장치의 손상 등 문제가 있는 경우 보수 또는 교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현장 점검

그런데 한국도로공사가 신축이음장치의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운행 중인 고속도로의 차로 일부를 차단하고 점검자가 신축이음의 협착 여부를 확인하거나 간격을 측정하기 때문에 교통차단비용(1일 기준 160만여 원)이 발생하고, 교통정체를 유발하며, 점검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된 교량 1개를 점검하는 데 약 60분이 소요됨에 따라 하루에 7~8개의 교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김인배 선임연구원은 2011. 1. 20.부터 2015. 6. 7.까지 도로교통연구원 연구기회실에서 교량 등 구조물에 대한 기술자문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축이음장치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2015. 6. 8.부터 구조물연구실에서 연구업무를 담당하면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신축이음장치 교체 등 보수·보강 공사를 위하여 실시한 기술자문 의견을 분석한 결과, 전체

42 /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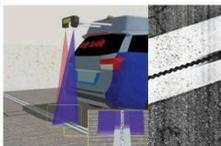
기술자문 의견 중 약 78%가 신축이음의 간격 부족이 원인이 것으로 분석되는 등 신축이음 간격의 적정 여부를 제때에 파악하지 못하여 교량구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속도로의 교통을 차단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신축이음 간격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고민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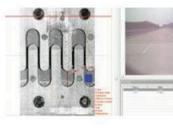
▲ 조사장비 개발 아이디어 회의

그 후 김인배 선임연구원은 2017. 1. 2.부터 "초고속 레이저 영상 기반 교량 신축이음부 거동 평가기법 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그림]과 같이 차량에 장착된 초고속 라인스캐너에, 레이저 스캐너 등의 장치를 활용하여 고속도로 교량차단 없이 80km/h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교량 신축이음 간격을 측정할 수 있는 무차단 신축이음장치 점검장비 및 점검기법을 개발하였다.

[그림] 무차단 교량 신축이음장치 점검기법 개념도



▲ 초고속 라인스캐닝 신축이음 조사



▲ 신축이음 간격 자동 판별

그리고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위 점검장비 및 점검기법을 이용하여 경부선 등 35개 노선에 있는 교량 5,100여개의 신축이음 간격을 측정하는 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속도로 교량차단이 필요 없게 되어 교통차단비용 약 160만여 원(1일 기준)이 절감되고, 교량 1개 기준 점검시간이 약 90% 단축(기준 60분 → 개선 5분)되었으며, 측정 정밀도 또한 1.0mm 오차 이내일 뿐만 아니라 기존 인력점검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정오차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위 무차단 신축이음장치 점검장비 및 점검기법을 활용하여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연간 교통차단비용 13억여 원이 절감되고, 점검시간이 단축되며, 교통정체 유발 및 점검자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줄어드는 등 신축이음장치 유지관리 업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구조물연구실
김인배

직급: 선임연구원
최종입사일: 2004년 4월 15일



한국도로공사 연구개발팀

44 /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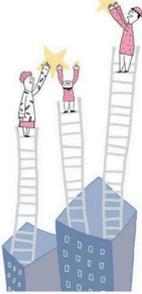


▲ 구조물연구실 직원들

김진태 선임연구원은 2001년 도로교통연구원 계약직 과제연구원으로 2003년까지 재직하다가, 2004년 한국도로공사 토목직 4급 대리로 공채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후 연구원에서의 구조물 관련 연구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구조물 점검 및 진단 업무와 관련한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당시 신입사원은 거의 다 지방 건설사에서 업무를 시작하는데 비해 김진태 선임은 본사 구조물직으로 발령이 나가 되어 구조물 점검 및 진단 관련 핵심업무를 5년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부터 홍천양양 건설사업단으로 발령받아 2년간 구조물 기술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도로교통연구원 연구과제실 과장으로 연구과제 실용화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토목직으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중 2015년에 전문연구원으로 신분을 변경하여 연구 업무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과거 한 교량 유지관리 방안 관련 세미나에서 어렵게 발언권을 얻은 한 참가자가 점을 뛰어가며 했던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문제해 결을 위해 발로 뛰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막상공문만 하고 있다는 자조적인 외침에 아직 우리는 진과 멀었나 하는 생각이 들이쉬 참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2004년 한국도로공사에 입사하여 고속도로의 구조물(교량, 터널, 암기)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구조물직'이라는 부서에서 신입사원의 첫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곳에서 구조물 진단 및 점검업무를 맡으면서 관련 기준을 익히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선배님들로부터 하나하나 배우면서 눈으로 현장을 관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노선에 심각한 결렬은 없지만, 누수는 생각이 없는지 기록하면서 '왜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할까?' 라고 떠오른 저그만한 의문 하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후 건설현장 등에 근무하면서 8 개 개월의 의문이 계속되었고, 끝내 한국도로공사에서 토목직으로서 근무한 11년 간의 경력을 뒤로하고 2015년 과감히 연구원으로 신분을 변경하였습니다.

연구업무를 맡게 되면서 그동안 눈여겨 봤던 문제점인 '교량 신축이음부 협력(틈이 좁아지거나 벌어져서 신축지동을 구속하는 현상)'이 왜 자주 발생하며, 그 해결방법은 없는가에 대하여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량의 신축이음장치는 상부구조물의 온도신축 등에 의한 원활한 이동 및 회전 가능 수행을 위한 부대장치로서 유간(여유틈)이 부족하게 되면 불로 우입(술음), 교량 거동 구속으로 인한 구조적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내부 기술자문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교량 신축이음장치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난 사례 중 약 70%이상에서



12년간 구조물 관련 토목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량 신축이음부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이 없는지 늘 고민을 했었던 터라 이 부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원들과 논의를 하고, 구조물연구실에서 업무를 하면서 과거 10년간 기술자문 자료를 찾아 신축이음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신축이음장치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케이스에 공통적으로 신축이음장치 협력(여유 틈 없음)현상이 관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진태 선임은 이때부터 신축이음장치 협력 정후를 미리 포착하여 예방적 유지관리를 도모하는 방법에 대해 구조물연구실 내부 회의에서 여러 의견을 모으고 해결방법을 강구해 나갔습니다.

기존의 신축이음장치 점검방법은 노선 부문을 차단한 후 갓길부에서 점검자가 직접 줄자로 유간(여유틈)을 재어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장비를 개발하여 부분차단 없이도 신축유간을 재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는데, 연구원 내부에서나 실무부서에서도 '그냥 노선을 부분차단하고 줄자로 재면 되지, 빗하러 큰 돈 들어서 장비를 만드냐?' 라는 반대의 의견도 있어 조사장비를 개발하는 데에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지만, 끊임없는 이해와 설득으로 결국 2016년에 초고속 라인스캔 카메라와 2D 레이저 스캐너, 그리고 GPS 기술을 응용하여 100km/h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교량 신축이음부를 자동으로 조사하여 이미지 센싱을 통하여 정확한 신축 유간을 D/B화하는 장비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태 선임은 이러한 업무를 훌륭히 수행함과 동시에, 노조간부로서 직원들의 복지와 애로사항 해결에 늘 노력하고, 음악적인 소양이 있어 밴드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직원의 정서 함양을 위해 늘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이타적인 자세를 가진 직원입니다. 또한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친화력을 가지고 있고 업무적으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주도적인 자세로 타직원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글.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연구실 연구실장 강 형 택



신축유간 협착이나 유간이 급격히 좁아진 현상이 관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간 협착 현상에 관심을 쏟은 이유는 협착이 발생된 이후에는 지반보강(앵커링), 신축이음장치 교체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된 보수보강을 수행하여도 현상 유지만 가능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건 교량 개축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협착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모니터링을 통해 정후를 포착할 수만 있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교량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겠다 판단하고 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우려곡절이 있었고, 앞으로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결국 산업계에서 사용된 초고속 라인 스캔 카메라 기술과 GPS 작동조사 및 이미지 센싱을 위한 AI기술(머신러닝) 등을 활용하여 무차단 교량 신축이음부 조사장비를 개발하게 되었고,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고속도로의 약 5,000개 교량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실용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되어 무엇보다 뿌듯한 마음입니다.

사투에 발췌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갈 길은 멀지만 그럴수록 기회 또한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대두됨에 따라 기술발전의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대보고만 있지 말고 직접 뛰어들어 큰 가치를 가진 혁신의 열쇠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본 조사기술을 개발하기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임직원들, 그리고 모범공적자로 선정해주시고 영령을 주신 감사원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제공인 제품인증서 발급절차 마련으로 수출지원에 기여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박형근 해군소령

국제공인 제품인증서 발급절차 마련으로 수출지원에 기여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박형근 소령은 2016. 1. 29부터 2018년 6월 현재까지 위 부서에 근무하면서 가스입자여과기*의 국제공인 제품인증서를 국내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국내 방위산업체 육성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국내 화생방 방호장비 생산업체 주식회사 SG생활안전(대표이사 이상용, 이하 "SG생활안전"이라 한다)은 수입품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에서 실시한 "무기체계 개

1) 화생방 방호시설에는 가스입자여과기, 방독면, 방독모 등 여러 방호장비가 설치되는데, 가스입자여과기는 화학적용제로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핵심장비에 해당

조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고, 2년여 간의 시행착오 끝에 기존 자사생산 가스입자여과기의 여과용량을 1,020 m³/h에서 1,500m³/h로 늘리면서도 부피증가폭을 최소화하여 2016. 12. 6.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상공' 판정을 받아 상용화를 앞두고 되었다.

방위사업청의 지원사업 수행 결과 '상공' 판정을 받은 SG생활안전은 싱가포르 당국이 발주하는 방호시설공사**에 위와 같이 개발한 신형 가스입자여과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주활동을 하던 중 국제표준화기구(이하 "ISO"라 한다) 제품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위 업체는 국내에서 국제공인 제품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였는데, 국제공인 제품인증은 국제시험기관인정협체 상호인정협정(ILAC MRA)**에 따라 ISO로부터 공인받은 기관이 발급한 공인력 있는 인증서를 통하여 증명하여야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화생방 방호장비의 국제공인 제품인증 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화학작용체를 취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학작용체 시험설비를 갖추지 못해 국제공인 제품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었고, 화학작용체 취급이 가능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학작용체 시험설비를 갖춘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예하 화생방 방어연구소는 ISO로부터 공인받은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국제공인 제품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

또한 위 업체는 해외 ISO 공인기관으로부터 가스입자여과기에 대한 국제공인 제품인증서를 발급받고자 노력하였으나, 방호산업분야 선진국인 스위스, 핀란드 등 해외의 인증기관들은 작금 제

- 방위산업체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기존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을 지원하는 사업, 한편 근대 화생방 방호시설공사에 설치되는 가스입자여과기는 여과용량은 크면서 부피는 작은 제품이 선호되는 추세인데,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은 방호산업분야 선진국인 스위스와 핀란드 등의 방호장비가 대부분임
- 상기로서 소방방재청에서 발주한 지하철 대피시설 등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신형 가스입자여과기

공의 국제시장 점유율 하락 등을 우려하여 해외 제품에 대한 인증서 발행을 꺼려하였고, 인증서를 발급해 주더라도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면서 시기를 지체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업체가 국내에서 국제공인 제품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화생방 방어연구소의 화학작용체 시험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였으므로, 위 업체는 2016. 12. 13.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국내에서 가스입자여과기에 대한 국제공인 제품인증서 발행이 가능하도록 '기업원장제로 개진과제'를 제출하였고, 이를 이철만은 국방부는 2017. 1. 25.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에 검토를 지시하였으나,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2017. 3. 2. 국방부에 화생방 방어연구소는 군사보호시설로서 민간기관 및 인원의 출입이 제한되고 외부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의 통제를 받게 되는 아웃소싱 협약 체결은 곤란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국방부는 2017. 3. 10. 이를 방위사업청에 이첩하였고, 박형근 소령은 국내 방호장비 업체(SG생활안전)가 싱가포르 화생방 방호시설공사 수주를 추진 중에 있어 최대한 빨리 제품인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방기술품질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등 민·관·군 협력에 제품인증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같은 해 4. 11부터 7. 13까지 4차례에 걸쳐 개최하였다.



▲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방기술품질원간 협연 체결

이 과정에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3차 협조회의(2017. 6. 1.) 시까지도 아웃소싱 협약 체결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는데, 박형근 소령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간의 아웃소싱 협약 체결 없이 제품인증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ISO/IEC 17065, 검토결과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하여 "계약"에 의한 외부인원(화생방 방어연구소)을 활용하는 경우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와 아웃소싱 협약의 체결 없이도 제품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박형근 소령은 아웃소싱 협약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방기술품질원 간에만 체결하고,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화생방 방어연구소)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의뢰하는 시험용역만 수행하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2017. 9. 26. 국제공인 제품인증체계를 구축하였다.



▲ 새로운 국제공인 제품인증서 발급 체계

그 결과 국내 최초로 가스입자여과기에 대한 국제공인 제품인증체계를 마련하여 단기간·저비용으로 국내에서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제품인증체계를 바탕으로 SG생활안전은 2017. 11. 30. 국내에서 신형 가스입자여과기(KC-150)에 대한 국제공인 제품인증서를 발급받아 2018년 후반기 싱가포르 화생방 방호

6) ISO 국제기준 "ISO/IEC 17065"에 따르면 계약에 의한 외부인원 활용은 아웃소싱에 해당하지 않아 "ISO/IEC"에서 요구하는 시험("60/IEC 17025), 검사("ISO/IEC 17020), 경영시스템("ISO/IEC 17021)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7) ISO 규정상 최종 인증을 하는 기관은 대외적으로 인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게 되어 있음. 이에 화생방 방어연구소에서는 검사항목에 대하여 인증은 하지 않고 검사결과 상치서만을 발급하고, 이를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화생방 방어연구소의 검사결과 상치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제품을 인증하게 되는 구조를 구축하였고 이러한 방법이 ISO 규정 등 각종 절차에 위배되는지 국가기술품질원에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을것을 확인함

시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수입공과의 경쟁 끝에 2017년 춘천시청으로부터 10대를 수주하는 등 총 3억 원 상당의 수입품 대체효과를 거둬서 국내입찰에서도 경쟁력을 갖춰 향후 수입품을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향후 동일·유사 제품 또는 후발입체가 적시에 국내에서 국제공인 제품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해외 및 국내 방호시설공사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인
사
배
려

박형근 소령은 1978년 7월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나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2001년 3월 해군소위로 임관하였고 2008년 방위사업청에 전입하였습니다.

전입 후 사업관리, 계약관리, 품질보증 등 무기체계 획득 전반에 걸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고, 2016년부터는 방산진흥국 방산정책과에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정교입니다.

항정사업부에 근무할 때는 국내 최고의 구축함인 이지스함의 전투체계와 무장 관급장비 10여종에 대한 사업관리를 완벽히 수행하여 작기에 합정이 해군에 인도될 수 있도록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무기체계계약부에 근무할 때는 관수함 장비 등 해군 장비제약을 건담하며 해군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가동을 유지에 기여하는 등 무기체계 획득업무의 핵심인 시공과 계약 부서에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개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인6시그마, 원가관리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방산진흥국의 총괄담당을 맡아 국장과 과장을 보필하고, 부서 전반의 중요 업무부터 사소한 행정 업무까지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통상 부서의 총괄담당은 서기관 또는 고참 사무관, 군인은 중령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형근 소령은 소령임에도 불구하고 방산진흥국 전체의 업무를 폭넓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조정·통제하여 총괄담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3월에는 「18-22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처음으로 연도별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강화시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방산진흥총괄담당
박형근
직급: 해군소령
최초임용일: 2001년 3월 1일



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전반기의 다양한 정책방향이 포함된 38개의 세부과제에 대해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수준 높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담당하여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출연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과 함께 현장 중심의 개발관리와 수출 지원을 통해 개조개발품이 수출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로 2014년 사업 시행 이후 3년 만에 최초 수출 성과를 이룬 바 있으며, 현재 개발완료과제 9건 중 6건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의 어려운 현실과 수출용 R&D 자금을 늘려달라는 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기획재정부와 협조하여 정부 예산규모를 2018년 22억 원에서 2019년 200억 원으로 약 790% 증액시키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평소 기업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귀 기울여 듣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박형근 소령의 모습을 자주 보았는데, 특히 이번 모범사례 전 역시 현행 법규와 절차에 맞지 않거나 명시된 바가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모색하고 관련 기관·부서와의 원만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에서도 다양한 업무경력과 폭넓은 식견으로 다른 부시원의 업무까지도 함께 공유하고 조언과 상담을 아끼지 않고 있어 부서원 모두가 신뢰하고 협조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군인에게 최고의 명예는 전군인에 박형근 소령이 올해 전군 인사에서 아쉽게 선별되지 못했지만, 내년 전군심사에서는 반드시 선별되어 중임으로서 이번 모범사례와 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합니다.

글.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장 해군대령 김 정 진

인터뷰



▲ 박형근 해군소령

2001년 해군소위로 임관하여 2008년 획득전문 특기를 부여받고 방위사업청으로 전입한 후 세종대왕급 이차시스템을 건조하는 KDX-III사업팀을 시작으로 함정기본설계팀, 함정계엄팀 등을 거쳐 2016년부터 방산진흥국 방산정책과에 근무하며 10여 년째 무기체계 획득업무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특성상 방산기업을 자주 만나서 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적·제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다반사라 쉽게 해결되는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4년 통영함 방산비리 사건 이후에 방위사업청 대부분의 부서와 공직자들이 경직된 업무처리를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더욱 방산기업의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큰 부담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방산기업 관계자를 만나는 것조차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게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제품개발에 성공한 한 방산기업의 건의사항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출을 하려고 준비하던 중 국제공인 제품인증서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국내에서는 발행이 어려워 해외 인증기관에 요청해 보려고 했으나 자국 기업 제품보호를 위해 외국제품의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니 인증시험을 위한 화학작용제의 사용은 군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으로 기관 간의 협조만 되면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인증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몇 차례의 협조회의를 했지만 군의 보안문제 등 각 기관의 절차와 사정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경우 이번 해외입찰을 놓치면 다음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기업을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인증서를 발행해 주면 기업이 알아서 수출할 수 있다는데, 이런 것조차도 정부기관이 해결해 주지 않고 기관 간의 입장 차이로 서로 나 몰라라 하는 현실이 군인이자 공무원인 나 자신에게 너무나 참피하게 느껴졌기에 방법을 찾고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면 정부기관은 적법한 틀 안에서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몇 달에 걸쳐 국내 인증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제공인 인증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우회적으로 시험 및 인증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했고 결국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해당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국제 인증서를 발행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해외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현재 수주 활동을 펼치고 있고, 또한 수입품을 사용하면 국내 시장에서도 수입품을 제치고 납품하게 되어 수입업체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통상 어떤 기업에서 건의사항이 접수되면 해당 법규와 절차를 먼저 따지고 그것들에 부합하지 않으면 현 제도상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기업에게 회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의 깊게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업무 자세가 필요한 때이며, 법규와 절차에 얽매고 소극적 행정으로 손이나 피해를 보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증체계 구축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모범사례 선정은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기에 참여한 모든 기관과 관계자분들의 공로로 돌리고 싶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고충 처리로 외자유치 등에 기여

인재발견



▲ 교통정보팀 직원들

천금록 주무관은 1967년 2월 강원도에서 태어나 수원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94년 6월 수원시청 전기직 8급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임용 후 수원시 종합운동장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면서 공무원이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은 동료들의 보람이 되었습니다.

당시 종합운동장은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프로농구, 축구, 배구 등의 경기가 치러져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곳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천금록 주무관은 기술 직렬로서 자격증이 있어야만 전문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퇴근 후 자격증 취득에 노력하여 2년 동안 전기기사 등 3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실함을 보였습니다.

이후 수원시 환경사업소로 발령받은 천금록 주무관은 황구지천 수질개선을 위해 시민들에게 생활하수를 절감토록 홍보하는 업무를 열정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생활하수 절감효과에 대한 유공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인터뷰



▲ 천금록 주무관

1994년 6월 제 첫 발령지는 스포츠와 행사가 빈번한 수원시 종합운동장이었습니다. 주된 업무는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행사지원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이었습니다.

전기직렬인 저는 청사 전기시설을 관리하고 행사에 필요한 전기시설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퇴근시간 이후 더욱 새로운 지식습득에 매진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2월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로 발령받았습니다. 교통 신호운영이라는 생소한 업무를 접하고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를 왜 우리 공무원이 하는지 의아함도 느꼈지만 동료들과 함께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며 신호운영 관련 민원이 제법 많이 제기됨을 알게 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홀몸노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어 천금록 주무관의 따뜻한 심상에 대한 칭찬이 동료 직원들 사이에도 자자합니다.

천금록 주무관은 2015년 2월 수원시의 교통정보를 담당하는 부시인 도시안전통합센터 교통정보팀으로 전보되면서, 생소한 업무인 교통신호운영을 동료직원의 도움을 받으며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교통정보팀은 다양한 교통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면서 효율적인 교통신호 운영을 통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차량정체를 해소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부서인데, 대도시의 교통은 출퇴근 시 교통정체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로 다양한 민원이 폭주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때문에 직원들이 기뻐하는 부서였으나, 이곳에서도 천금록 주무관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시민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돋보였습니다. 여러 민원접수 창구를 통해 들어온 각종 민원에 대하여 일일이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 민원인에게 상세히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처리 일정을 답변하는 모습을 볼 때 저절로 미소가 자아지곤 했습니다.

그 중 영풍구 봉영로 민원 해결을 위해 신개념 신호체계를 개발하여 감사원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일은 수원시 교통문화의 격을 높인 일로서 부시장인 지도 주민 불편을 해결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천금록 주무관 본인의 '행복하게 즐겁게'라는 생활신조에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의 공직 생활에서도 시민에게 어떤 편리한 변화를 줄지 기대합니다.

글.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양경환



대 수원시의 인접한 용인시와 화성시 도시개발로 우리시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증가하여 수원시 영풍구 구간서 도로인 봉영로 느리나무 사거리의 차량신호시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시 교통신호시스템 운영 직원과 함께 교통량 조사에 나섰습니다. 거의 날마다 현장에서 신호체계의 문제점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논의했고 현 신호체계로는 왕복 13차로의 횡단보도 보행시간과 주도로의 교통량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한 신개념 신호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고질적으로 차량정체가 심한 느리나무 사거리에 신개념 신호체계를 적용한 결과, 차량정체 해소뿐만 아니라 충분한 횡단보도 보행시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고 이후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직원들과 함께 신개념 신호체계를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올해 공직 생활을 시작하지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힘들고 막막했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할 때마다 함께 뛰어준 동료들이 있었기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들의 밤과 따뜻한 격려가 있었기에 작은 결과에 보람을 느끼며 오늘까지 이 수 있었습니. 감사원장 표창 수상의 큰 영광을 주신 감사원과 동료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틀 안에 가두지 않고 열린 생각으로 일하고 스스로 다짐하며 수원시 슬로건인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학교설립 지원으로 지역 교육여건 향상에 기여

잉여 소각열 판매로 자원회수시설 효율화에 기여

잉여 소각열 판매로 자원회수시설 효율화에 기여



안산시 환경에너지교통국 자원순환과는 2001. 4. 6부터 2018년 3월 현재까지 1일 200톤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고 여기서 발생한 폐열을 지역난방 공급업체인 안산도시개발(주)에 공급하는 쓰레기 소각장(이하 "이 건 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연간 1,274백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있다.

이 건 자원회수시설의 2016년도 열 회수율(이하 "회수율"이라 한다)은 최저 14.9%(8월) 내지 최고 59.3%(4월)로 연 평균 41.4%에 불과하여 이 건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된 소각열 중 전력 및

1) 2014 ~ 2016년 평균 판매수익
2) 회수율 = (열 판매량 ÷ 전력판매량) / 열 총생산량

지역난방에 공급(41.4%)되고 남은 열(58.6%)은 공기 중에 그대로 방출하게 되어 대부분 활용되지 않았다.

한편, 2016. 5. 29.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법률 제14229호)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가 도입되었고 같은 법 부칙(2016. 5. 29.) 제1조에 따라 위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를 2018. 1.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73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을 처분하는 자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는 경우 회수율이 50%가 넘으면 회수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50% 내지 75%를 감면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자원순환과는 2017년 5월경부터 이 건 자원회수시설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관련 작업에 착수하고 다른 시·군 현황을 조사하였다.



▲ 자원회수시설 현장방문

그러나 경기도의 다른 시·군 판매 26개 자원회수시설 소각열 이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자체 사용하고 있거나 일부 전력을 생산하는 데 그치고 있었고, 잉여 소각열을 민간업체에 공급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없어 벤치마킹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런데 자원순환과는 하절기 잉여소각열 공급가능성이 있는 소각열 인근 열병합발전소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7. 7. 4. 이 건 자원회수시설 인근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판매 업체 (주)과



10여 차례에 걸쳐 잉여소각열 판매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와 성과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자원순환과는 이러한 협의를 바탕으로 2017. 9. 20. "자원회수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0. 23. "안산시는 소각열 공급단가는 15,500원/톤으로 하고, 공급량은 연간 20,000톤 이상으로 하여 향후 5년간 (주)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일한다"라는 내용의 '잉여 소각열 공급 및 사용 등에 관한 협약서'를 (주)과 체결하였으며, 내부적으로 동·하절기 수요를 감안하여 연간 28,000톤 이상(총금액: 434백만 원*)을 공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자원순환과는 2017. 11. 3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327백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고압 증기복수기에서 발생하는 잉여 소각열을 공기 중에 그대로 버리는 대신에 (주)에 판매할 수 있도록 설비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과는 2018. 1. 1부터 같은 해 2. 28까지 2개월 동안 (주)에 2개월간 4,097톤의 잉여소각열을 판매하였다.

또한 향후 이 건 자원회수시설에서 기존 판매량 109,970톤(73,020Gcal)에 추가로 (주)에 최대 소각열 연간 20,000톤부터 최고 연간 28,000톤을 판매할 경우 기존 회수율은 41.4%에서 각각 48.9%, 51.9%로 상승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원순환과가 적극적으로 임무를 처리함으로써 잉여 소각열을 연간 20,000톤만 판매하더라도 연간 소각열 판매수입액이 310백만 원 늘어나 5년간 잉여 소각열 판매 수입액이 1,550백만 원이 되어 초기투자비 327백만 원을 자감하더라도 5년간 총 1,223백만 원의 재정 수익이 기대되며, 잉여 소각열을 연간 28,000톤까지 판매할 경우에는 5년간 최고 3,393백만 원에 이르는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3) 434백만 원 = 28,000톤 × 15,500원



과장 김 민



팀장 김 기선



주무관 김 현표



주무관 고 은정

자원순환과 과장으로서 우리 부서가 자원순환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우리 부서원들이었기에 이렇게 모범 부서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뛰어난 역량을 가진 우리 부서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부서원들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직원들을 두루 살피며 직원들의 애기를 귀담아듣는 과장님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열심히 된 동료들 덕분에 모범부서로 선정되는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에 별명을 받아 직접 일하면서 자원의 소중함을 다스리면서 깨달고자 한 재충전을 위한 개인이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직원들이야말로 "인산의 살아있는 자원"이라고 자부합니다.

항상 즐겁게 일하는 부서원들 덕분에 저도 즐거운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솔선수범하고 시료를 배워가는 부서원들이야 우리 부서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좋은 분위기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 직원들

안산시 생활쓰레기 소각장은 자원회수시설입니다. 이점에서 느껴지듯이 단순하게 쓰레기만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열에너지와 회수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열병합발전소입니다.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증기터빈발전기로 시간당 1,500kw의 전기를 생산하고, 증기터빈발전기 후단에서 다시 온수를 생산하여 지역난방 공급업체에 공급해 연간 18억 원의 세외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열수요가 적은 하절기와 지역난방 공급업체 전력 생산 시 온수 판매량이 급감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안정적인 열 판매가 결실한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1톤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면 1만원의 부담금을 시·도지사에게 납부하고, 소각장 에너지 회수효율을 측정하여 회수효율이 50% 이상이면 50% 이상의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자원순환기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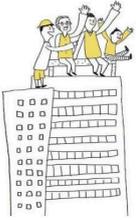
이에 우리 부서원들은 안정적인 열 판매처 확보와 에너지 회수효율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소각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안산스마트허브 내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위주의 행정으로 마침내 고압증기(스팀) 판매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앞에 소각열 판매를 통한 자원회수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업체 협의, 전문가 자문 및 법률 검토, 시설공사비 확보를 위한 시의원 설득, 공사완료까지 불과 4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부서원 모두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번처럼 큰 보람을 느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저 자원회수시설의 운영효율을 개선하고자 시작했던 사업이 좋게 평가받아 모범 사례로 채택되니 기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로버트 콜리에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할 수 있고,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될 수 있으며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거나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갖는다는 모두 우리 생각에 달려있습니다. 저지르면 저지지만 미지르면 이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화이팅!!

글. 안산시청 자원순환과 송기선



밸브박스덮개 자체개발로 예산절감 등에 기여

벨브박스덮개 자체개발로 예산절감 등에 기여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플랜트사업팀은 2015년 9월 김포공항 등 공항 계류장¹⁾ 지하 급유 시설에 사용되는 벨브박스덮개²⁾를 자체 개발하였다.

플랜트사업팀은 1981년부터 1999년까지 김포공항 계류장 지하의 급유배관 제어기 설비용 지하 벨브박스 29개소에 작업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된 벨브박스덮개가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 하자 2015년 3월 위 제품생산업체를 조사한 결과 미국 업체로부터 벨브박스덮개를 구매할 수 있으

1) 비행용 동력장치나 정비 항공기 대기하는 장소
2) 일종의 맨홀(manhole) 두껍막

나 위 회사 제품의 가격이 고가(중형: 73,870천 원, 소형: 52,000천 원)일 뿐 아니라 스프링 장력에 의한 경첩 개폐 방식³⁾이어서 개폐작업에 2인을 필요로 하는 등 조작이 불편하고, 부용 파손 시 조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작업에 유지보수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고, 국내에서는 수요가 부족하여 생산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플랜트사업팀은 2015년 3월 위 벨브박스덮개를 자체 개발하기로 하고, 먼저 사용재료를 분석하던 중 항공기용 알루미늄 합금강으로 벨브박스덮개를 제작하면 차량 및 용접구조용 알루미늄 합금강으로 제작된 기존 미국 업체 벨브박스덮개 보다 무게를 경량화할 수 있고 인장강도(張強⁴⁾) 등의 기계적 성질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재료로 벨브박스덮개 제작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플랜트사업팀은 항공기 하중을 고려한 최대작용하중(45ton)을 견딜 수 있도록 강판 두께를 50mm로 설계하고, 개폐작업이 용이하도록 기존 경첩 개폐방식 대신에 미끄럼 개폐방식을 적용하여 벨브박스덮개 설계도면을 완성하였다.

그 후 플랜트사업팀은 자체 설계한 제작도면을 이용하여 30,000천 원의 비용으로 중형 벨브박스덮개(폭 1,100mm, 길이 1,860mm)를 시험제작하여 2015. 8. 23. 김포공항 국내선 계류장에 설치하고 정상작동이 확인되자 2017년 11월 말 현재까지 노후화된 벨브박스덮개 14개를 자체 설계한 제품으로 교체하였다.



3) 경첩(hinge)을 중심으로 아래에서 위로 들어올리는 방식
4) 재료의 힘(力)이 강할 때 피단하중이라고 건다는 하나의 능력



팀장 김한수

우리 팀이 하이드런트 벨브박스 개선 공적을 인정받아 감사원으로부터 모범부서로 선정된 것은 각자 제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수행해온 부서원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 뿐인데 이렇게 좋게 평가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두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 김한수



팀장 김한수



팀장 김한수



팀장 김한수

공무란 경험과 공평운영의 노하우를 갖춘 팀원들이 함께 노력했기에 모범부서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위치에서 더 노력하여 공항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장 유병갑

우리 팀은 공항 핵심시설인 플랜트시설을 관리하면서 항상 현장 근무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여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모범부서로 선정된 것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팀이 벨브박스커버 개발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모범부서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부서원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항상 각자의 자리에서 공항 핵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서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팀이 더욱 더 높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원 김태현

우리 팀은 어느 누구하나 현상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적인 부서입니다. 특히 그 중 하이드런트 벨브박스 커버 개발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려는 의지와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모범부서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원 노승민

5)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형 벨브박스덮개 5개, 소형 벨브박스덮개 9개 등 총 14개의 벨브박스덮개를 교체하여 각각 247,870천 원, 190,000천 원 총 437,870천 원의 예산을 절감
6)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중형 벨브박스덮개 7개, 소형 벨브박스덮개 14개 등 총 15개의 벨브박스덮개를 교체할 예정으로 각각 42,000천 원, 35,000천 원 총 37,000천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 플랜트시설팀 직원들

공장의 플랜트시설은 항공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특수한 시설로 외부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핵심 기계시설입니다.

우리 팀은 이와 같이 공장의 핵심 기계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후된 맨홀 커버는 금속 재질로 만들어져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맨홀 커버의 개폐 작업이 불편하고, 현지 부분이 맨홀 커버의 중량을 견디지 못하고 손상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권동벨트와 각종 계측용 전송장치 등을 모두 설치할 경우 기존의 맨홀커버 보다 사이즈가 훨씬 크고, 고중량이기 때문에 작업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케다가 고가의 수입제품을 사용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크고, 국내 기업에서는 까다로운 제작기준에 비해 수요량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생산을 기피하고 있어 우리 팀에서 자체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체개발 과정에 예상하지 못했던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팀원 모두가 일치

된 마음으로 문제점을 하나의 해결하여 기존 제품보다 가볍고, 인장강도 등이 더 우수하며 안전한 맨홀커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모범사례로 선정되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자체개발을 위해 그간 고생하였던 팀 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팀 구성원은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항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고자 하는 팀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반드시 따라올 것이 분명하지만 감사원으로부터 모범부서로 선정된 것을 좋은 계기로 삼아 공장의 핵심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 나은 공항, 더 나은 시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한 발짝 더 전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플랜트시설팀 황유성



체계적 위험관리로 운영리스크 예방에 기여

참여·상생적 두루미 서식지 보호사업 추진으로 두루미 개체 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환경부 환경정책
자연환경과

참여·상생적 두루미 서식지 보호사업 추진으로 두루미 개체 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멸종 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의 규정에 따라 철원 지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생물인 두루미 종에 대한 서식지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106 / 107

그리고 2015년 11월, 12월 및 2016년 2월 등 수차례에 걸쳐 지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NGO 등이 참여한 회의·포럼·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두루미 서식지 보전·관리방안 및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지역주민 소득창출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2016년 1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두루미 생태관광 활성화 지역 전학(인문 쿠시)을 실시하는 등 두루미를 잘 보호하면 생태관광자원으로 이용하여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을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데 노력하였다.

또한, 농민·환경단체·지역단체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내용과 추진 방향 등을 함께 계획하고 추진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위 무사는 2016년 6월 체계적인 두루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두루미 서식지 보전 및 생태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정책 목표 및 추진체계 구상을 총괄하고 전문가로 하여금 국내 외 두루미 루트 네트워크 지원을 조사·분석하고 협력기관 등을 파악하여 국내·국제적 협조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두루미 재두루미 등 종(種)별로 서식처를 도면화하고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등 과학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보호지역을 핵심지역·완충지역·전이지역 등으로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단계별 보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및 지역주민 역량 강화방안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겨울철 수확이 끝난 4개 지역 94필지(38만여 m)의 논에 물을 가두어 두루미의 잠자리 및 먹이 집적 공간으로 제공하고, 주민들로부터 우렁이(800kg)를 수매하여 먹이 공급하거나 볍씨(300kg)를 공급하는 등 겨울철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2016. 11. 10.) 하여 두루미에게 겨울철 먹이를 제공하고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며 환경보호 홍보 효과도 도모하였고, 그 외 전신주 표시사업, 벚꽃 존치사업 등도 추진하는 등 두루미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였다.



▲ 우렁이 먹이주기 행사

자연환경과

108 / 109

※ 두루미류의 분류학적 위치: 두루미목 두루미과에 속하는 15개 종을 '두루미류'로 통칭(사진 참조)
- 그 중 '두루미'는 전 세계 개체 수가 2,700여 마리(2015년 사업 추진 당시 기준)에 불과한 멸종위기 1급 조류로서, 일본 최대현 1,500마리를 제외한 1,200마리 중 600~800마리가 철원에서 활동하는 등 철원은 전 세계 두루미의 최대 월동지
- '재두루미'는 전 세계 개체 수가 6,000여 마리(2015년 사업 추진 당시 기준)에 불과한 멸종위기 2급 조류로서, 철원 지역에서 약 1,000~1,500마리 활동
- 이외 흑두루미, 검은목두루미 등 7종이 철원 지역에 도래

[사진] 두루미의 종류



▲ 두루미 ▲ 재두루미 ▲ 흑두루미

철원지역의 민통선 내 경작지, 장지대 내부 습지 및 한탄강 일대는 약 150km 규모의 넓은 평지로 겨울에도 얼지 않는 여울 등이 어우러져 철새가 서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춘 곳으로서 전 세계 야생 두루미의 약 30%가 겨울을 나는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세계 최대의 두루미 월동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개발사업 등으로 서식지가 갈수록 훼손되어 2010년 이후 두루미의 개체 수가 줄고 있었으나 서식지를 보전·관리하는 방안은 없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철원 평야는 접경지역으로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이 위치하여 그간 개발에 많은 제약이 받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두루미 보호사업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 규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두루미 보호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던 상황이었다.

이에 자연환경과는 효과적인 두루미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주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수라는 판단 하에 2015년 8월 두루미 보호 사업을 원주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강원도, 철원군), 기업(한국전력공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철원 두루미 서식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9월 관계기관 간 철원 두루미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는 [표 1]과 같이 위 4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역새 차폐사업, 논두렁 풀베기 등 추가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한편, 두루미 서식지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 테마관광 루트 개발, 철새생태학교(www.dmr.or.kr), 철원철새 탐조 프로그램 등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표 1] 두루미 서식지 보호사업

구분	대상지(규모)	내용	비고
겨울 무늬조성	핵심서식지 330천㎡	논에 물을 받아 활동지, 잠자리 제공	
우렁이 먹이주기	무늬조성지, 800kg	우렁이농업 시행 농가에서 우렁이를 수매하여 두루미 먹이로 공급	행사 개최
전신주 표시사업	두루미 이동경로 5개 구간, 7,450m	두루미 주요 이동 경로상의 전선에 가시성 높은 노란색 표시 설치하여 충돌 예방	완전 시행
벚꽃 존치사업	철원 평야 일원	수확 후 벚꽃, 내이삭을 논에 잘라 놓아 먹이 공급 및 안정적 서식환경 조성	철원군 시행 414개 농가 참여
역새 차폐사업	두루미 철자리 주변	활동지 일대 도로·경작지 주변에 역새 등 자연재료로 차폐시설을 설치	철원군 시행
논두렁 풀베기	핵심서식지	논두렁 풀베기를 통해 체초제 사용을 억제하여 환경오염 예방	

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두루미 생태관광객 증가 2015년 1,300명→2017년 4,500명, 철원군청 집계), 쌀 등 농산물 포장재 등에 이용할 브랜드 로고를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 2]와 같이 사업이 추진된 2015년 말 이후부터 두루미의 개체 수가 지속 증가하여, 2018년 1월 실시한 철원평야 동시센서스에서는 관측 이래 가장 많은 930마리의 두루미가 관측되고, 재두루미는 3,983마리가 관측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2] 두루미 재두루미 개체 수 변화

구분	2012년 1월	2013년 1월	2014년 1월	2015년 1월	2016년 1월	2017년 1월	2018년 1월
두루미	603	663	715	711	763	792	930
재두루미	1,115	1,029	2,085	2,444	2,777	2,766	3,983

1) 겨울 무늬 조성, 우렁이 먹이주기, 전신주 표시사업, 벚꽃 존치사업 등 4개 사업

자연환경과

또한 2018. 1. 23. 철원평야 일대 비무장지대 철새도래지(철새평화타운)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지역주민들의 추가 소득 증대가 예상되며, 2018년 강원권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찬성하는 등 생태보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 ▶ 생태관광지역 지정 제도
 - 자연과 인원이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할·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자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 철원 등 신규 지정 6곳을 포함, 2018년 현재 소천산, 제주도 동백동산습지 등 26곳 지정
 -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 방문객과 소득이 지정 전과 대비하여 평균 112% 및 79% 증가하는 등 주민 소득 증진 효과

이와 같이 위 부서는 두루미 서식지 보호사업을 민·관·기업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열정의·창의적으로 지속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생태다양성 증진에 기여하였고 철원평야 지역을 인간과 야생생물의 상생·공존의 공간으로 형성해 내었으며 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훌륭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2018년 환경부가 해당 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추진하였을 때에는 주민들 반발도 무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서원 한마디



과장 남미란

업무 성과는 직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 현장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원동력이 되어 두루미에게 안정적인 서식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은 보람을 갖게 되어 뿌듯합니다. 함께 준 자연환경과 직원들 그리고 철원 주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팀장 이윤종

작년 두루미 서식지 보호사업 중 가장 큰 행사인 '2017 철원 두루미 국제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부서원이 다같이 힘을 모아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루미 사업은 철새들의 서식지 보전에도 기여했지만 우리 부서가 하나로 뭉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관 이준석

'철원 두루미 서식지보전사업'을 통해 자연과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는 지역주민, 관계자 등과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모두의 노력으로 이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김경난

우리 자연환경과가 멸종위기종인 두루미 보호사업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모범부서로 선정되어 영광스럽습니다. 당연히 할 일이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고 더욱 더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는 자연환경과가 되었습니다.



실무관 남재현

자연환경과가 멸종위기종 두루미 서식지 보호사업의 공적을 인정받아 감사원으로부터 모범부서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부서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 협력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연환경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연환경과 화이팅!

인터뷰



▲ 원주시청환경청 자연환경과 직원들

철원 DMZ 일원은 넓은 평야와 한탄강이 어우러져 우수한 서식 환경을 갖춘 세계 최대의 두루미 활동지역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천연기념물인 두루미 서식지 보전활동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법정보호종인 두루미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이러한 활동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두루미와 지역주민의 공생방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에서 주민들의 인식개선과 보호활동 등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두루미라는 희귀한 새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을 생태관광의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생각, 즉 두루미 보전활동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우선 추진하였습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육과 생태관광 우수지역 탐방, 정기적인 회의와 보호활동을 주도적으로 끌어가도록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외국의 상생사례 등을 주민들에게 알려 두루미

가 찾아오는 것이 '생태자원이자 '축복'임을 알리고, 주민들이 보호활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철원 두루미 국제심포지엄

두루미 보호활동에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젊은 후임자를 수배하는 등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이 일이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자주하였고, 열정적인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된다는 것에 뿌듯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글. 원주시청환경청 자연환경과 이영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 지원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

영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과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 지원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



도시재생사업 우수 모델 발굴

영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과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경쟁력 확보,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시정과 영주의 이천으로 쇠퇴한 구 영주역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

경북 영주시에 소재한 구성마을은 2014년 당시 독거노인의 비율이 73.9%로 3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71.0%에 달하고 폐가는 쓰레기 투기 장소로 방치되는 등 슬럼화 지역으로 전락한 상태였다.

이에 도시과는 국토교통부에 2014. 5. 7. 위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2014. 11. 12. 국토교통부로부터 위 지역의 활성화 계획을 승인받아, 2015. 2. 1. 민간활동가를 위촉하고 2015. 4. 21. 시 직영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였다.

1. 주민 인식 개선을 통해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유도

도시과는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 하에 2015년 1월부터 주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텃밭 및 베란다길 설치 문제 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5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시행된 제1기 도시재생대학 교육을 기회-실시하여 주민 스스로가 삶의 터전에 대한 미래상을 그리도록 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사업 추진역량을 강화함과 아울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더라도 도시재생이 지속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마을 주민들을 독려하여 매월 2회 동네청소 및 텃밭가꾸기 등 공동체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청소도구 구매와 다용도 비닐하우스 제작 등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2015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영주시 구성마을 도시재생기반시설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구성마을을 통합 유지·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무분별한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마을 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대책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대책을 통하여 쓰레기 투기장소로 방치되던 폐가 등을 정리하고 베란다길(길이: 129m) 및 텃밭(면적: 205mm)을 조성하는 등 슬럼화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적극 개선하였다.



2.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도시과는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주민들에게 사회적 경제 기초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심화 교육을 진행한 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원주, 상주 등 우수사례 답사를 지원하였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우수 모델 발굴

98 / 99



▲ 구성마을 교육 및 우수사례 답사



▲ 활매 목공소 준공식

▲ 활매 목공소 개소식

그리고 2016. 2. 27. 구성마을 주민들이 요양 및 병원이용 서비스와 텃밭가꾸기 노후수 전수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과 농원 등 지역공동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데 가로 역할을 하였다.

한편, 도시과는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문제 등 다양한 시제품을 2~3차례 제작·판매해 본 후 고령층이 다수인 주민 특성과 수익 창출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목공예, 목 제조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목 공장 시설 부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초 목 공장 예정지 소유자가 구성 마을에 거주하지 않아 마을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목 공장 구성원들이 주로 거주하는 영주동 10통과의 원거리 도보 등을 이유로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도시과는 부지 확보를 위한 3개월 간의 노력 끝에 영주동 10통 인근에 목 공장 대체 부지를 마련한 후, 2016. 9. 7. '활매 목 공장을 준공할 수 있었고, 다음 해인 2017. 3. 4. '활매 목공소도 개소하여 각각 할머니 16명과 할아버지 8명의 일자리를 만들게 되었다.

또한 도시과는 2016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목과 공예품 홍보를 위한 캐릭터 및 브랜드 개발 용역을 시행하고, 2017. 9. 19. 지역축제 등에 홍보할 수 있도록 인근 기업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판매촉진 활동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7년 1월부터 '활매 목 공장' 및 '활매 목공소의 목과 두부 및 목공예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시청 홍보전산실과 연계하여 직접 기회보도를 하는가 하면, 'KBS 6시 내고향', 'MBC 전국시대' 등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 촬영 협의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사업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와 동시에 도시과는 '활매 목 공장' 및 '활매 목공소의 제조·판매 종사자가 고령으로 식품 제조업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자 세마을관광과 및 관광세무서와 협의하여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3.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우수 모델 정립

도시과는 '활매 목 공장' 및 '활매 목공소가 주민들의 소득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하도록 하기 위해 2016. 4. 7. 사회적 협동조합 전문가를 초빙하여 컨설팅을 지원하여 '활매 목 공장'은 2016. 11. 11., '활매 목공소'는 같은 해 11. 29. 각각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를 받았다.

또한 2017. 9. 18. '활매 목 공장'이 'H-온드림 사회적 기업 창업오디션'에 당선되어 최대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18. 1. 8. 활매 목공소는 경상북도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승인을 받게 되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우수 모델 발굴

100 / 101

그 결과 '할매 목 공장'에서 창출된 수익의 일부로 독거 노인들에게 식사 나눔행사를 진행하는 등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에 수익을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 도시재생사업의 우수 모델을 정립하게 되었다.

또한 도시과의 주도로 진행된 구성마을 도시재생사업은 2015년부터 2년 연속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2017년 한 해 동안 34개 단체에서 500여 명이 벤치마킹 방문을 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선진모델로 전파되었다.



도시라는 개개인의 역할이 뛰어나기 때문에 부서원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모범부서로 선정된 것은 부서원들 모두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열심히 임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으로서 앞으로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팀장으로서 역할은 팀원 스스로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해서 최고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임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부서가 감사원 표창을 수상함에 따라 팀원들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분이 마린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팀장 박희연



이번 모범사례로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1년동안 수행한 도시와 업무 중에서도 특히나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화합하고 각자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모범부서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정진하고 항상 주민들과 소통하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김도현



우리 과거 도시재생사업의 공적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모범부서로 선정된 것은 부서원 모두가 각자 제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묵묵히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과 화이팅!!



주무관 이홍승



좋은 동료분들과 팀장님, 과장님 덕에 생소하고 어려운 사업에 겁없이 달려들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려운 도시재생사업을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김희현

인터뷰



▲ 2017 마을기업 및 공동체 한마당 최우수상 수상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주민 중심의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사업의 성공과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을 만큼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추진과정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입니다.

구성마을은 평균연령이 65세가 넘는 초고령화된 마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으로 지금은 번듯한 할매 목 공장과 할매 목공소가 들어서 있지만 과거 그 자리에는 폐기와 쓰레기가 넘쳐나고 매년 봄마다 지네가 출몰하여 주민들이 물리는 등 극도로 주거환경이 불량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의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발굴하고 시행하고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인식개선이었는데 주민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주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들을 수시로 고민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과정들이 쉽지않은 않았습니니다.

또한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금은 많은 자침과 가이드라인, 로드맵들이 생겼지만 초창기에는 전문가도 사업에 관련된 정보도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해 보자는 마음으로 영주시, 주민, 전문가가 힘을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초기 부지협의 지연으로 주민들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공동체 안에서 다름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지부진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뭔가 해보고자 하는 것을 도와드린다는 생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전담, 영주시에서 대차방반을 마련해 가는 과정 하나 하나가 도시재생사업의 과정이고 이를 통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오늘날의 할매 목 공장, 할매 목공소라는 차치한 의미 있는 성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처음 목공장 준공식을 개소하던 날 주민대표이신 권문자 이사장님이 "이렇게 언제 많은 사람들 직장을 쥐시 고맙다, 열심히 운영하여 목공장을 우리가 나중에는 시로부터 매입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간의 어렵고 힘들었던 감정이 눈 녹듯 녹았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할매 목공장과 할매 목공소가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유명 언론 매체 등에서 앞 다퉈서 취재를 올 정도로 많이 알려진 케이스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이 사업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사업이 종결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향후 오랫동안 자생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현재도 진행되고 앞으로도 진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발굴하고 이를 전문기적인 관점에서 실현방안을 강구해서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과 건물이나 물건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글, 영주시청 도시과 김희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운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기여

첨단 농산물재배기법 도입 등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실적 제고

적극적 의료지원으로 주민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

필수의약품 카나마이신의 위탁제조를 통해 다제내성 결핵 치료에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필수의약품 카나마이신의 위탁제조를 통해 다제내성 결핵 치료에 기여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는 「약사법」 제2조 제19호 및 제83조의3에 따라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 필수약품으로 지정(2017. 12. 31. 현재 211개)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다제내성(多耐性, MDR: Multi-Drug Resistant) 결핵은 1차 항결핵제인 리팜핀(rifampin)과 이소니아지드(isoniazid)에 내성이 있는 결핵으로, 국내에는 2016년 현재 다제내성 결핵환자 852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그러나 유한양행은 카나마이신은 저가의약품(건강보험급여 상한금액 760원)인데다 국내에서 원료를 구하기가 어렵고, 제조원가 이외에 기본적인 품질검사, 유통비용 등의 기본 유지비용이 소요되는 등 소규모 생산으로는 이익이 나지 않아 생산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국내에서 공급이 어려운 필수약품을 외국에서 특례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보다 가격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자국에 우선 공급한다는 사유로 공급을 중단하면 국내 환자 치료 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의약품정책과는 2016. 1. 14. 국내 공급중단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필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한국외국·필수의약품센터(이하 "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¹⁾를 통해 국내 제약회사와 위탁제조 계약을 체결한 후 국가필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의약품정책과는 2016. 1. 19. 필수약품센터에 카나마이신 등 5종의 국가필수약품에 대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지 한국제약협회와 공급가능성을 협의하고 위탁 제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업체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한국제약협회는 2016. 2. 19. 의약품정책과가 공급중단 이후 계속 실드했던 유한양행만 카나마이신에 대해 위탁제조를 통한 필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그 후 의약품정책과는 유한양행과 카나마이신 위탁제조 계약을 위해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계약조건, 납품단가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제내성 결핵 치료 주사제인 카나마이신을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유한양행이 카나마이신에 대한 원료 품질의 영향을 최대한 줄여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분말주사제 대신 역상주사제로 제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자 역상주사제 품목허가를 위해 신속히 기술·행정적 지원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약품정책과는 2016. 5. 3.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카나마이신 유한양행에 위탁제조하여 다제내성 결핵환자에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인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추진

「결핵 진료지침(제3판)에 따르면 다제내성 결핵의 집중치료기간은 최소 8개월을 권고하고, 총 치료기간은 과거 다제내성 결핵 치료력이 없는 환자에게 최소 20개월을 권고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주사제는 금기가 없는 한 집중치료기간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핵심적인 약제로 카나마이신(Kanamycin) 주사제(이하 "카나마이신"이라 한다)와 아미카신(Amikacin) 주사제(이하 "아미카신"이라 한다)을 우선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카나마이신은 1일 1회 근육주사로 부여하는 반면 아미카신은 1일 3회 근육주사로 부여하거나 30~60분 이상 정맥주사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다제내성 결핵 치료에 카나마이신을 우선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4월 다제내성 결핵 치료에 필수적인 카나마이신(국가필수약품)을 유일하게 생산하던 주식회사 유한양행(이하 "유한양행"이라 한다)이 수입원료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사유 등으로 국내 생산을 중단하였다.

이에 다제내성 결핵환자들은 대체주사제인 아미카신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나 아미카신의 경우 치료용량(15mg/kg, 최대용량 1g)을 근육으로 주사할 경우 근육주사 횟수(하루 일 3회)가 많고, 정맥주사로 부여할 경우 긴 시간(30~60분)이 소요되는 등 환자 불편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카나마이신의 안정적 공급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이와 관련 의약품정책과는 2015. 7. 23. 질병관리본부(에이즈·결핵관리과)로부터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인 카나마이신의 국내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다제내성 결핵 치료에 큰 차질이 우려되므로 카나마이신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받았다.

이에 의약품정책과는 2015. 12. 7. 및 2016. 5. 25. 2차례에 걸쳐 독일에서 카나마이신 주사제를 특례수입²⁾하여 우선 공급하였다.

한편, 의약품정책과는 2015년 12월까지 유한양행과 여러 차례 우선 및 이메일을 통해 국가필수약품인 카나마이신의 국내 생산이 필요하다고 설득하였다.

1) 질병관리본부(가) 식약처 신약 한국외국·필수의약품센터에 허가·필수의약품을 공급해주도록 요청하면 위 센터는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 해당 약품을 특례수입
- 특례수입은 국내 허가용량과 달리 정식 통관할처용량검사 등을 생략하고 신속한 통관이 가능

방안이 타당하다는 신의를 받은 후 2016. 6. 20. 필수약품센터에 유한양행과 위탁제조 계약을 체결하고 카나마이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이에 필수약품센터는 2016. 7. 22. 유한양행과 "카나마이신화산염 주사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요청한 카나마이신 연간소요량 12만 앰플을 위탁제조하도록 한 후 2017년 4월 카나마이신 12만 앰플을 납품받았다.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2017. 4. 4. 필수약품센터로부터 카나마이신을 긴급 구매하여 국립결핵병원 및 전국 시·도보건소 등에 공급하였다.

그 결과 결핵과 같이 국가차원의 질병관리에 필요한 의약품의 국내 제조를 통한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다제내성 결핵환자(2016년 현재 852명)의 불만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한 전염 가능성을 예방하는 등 집단면역체계의 구축 및 국민보호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국가필수약품인 카나마이신을 국내 제약회사를 통해 위탁제조하여 공급함으로써 외국 의약품을 특례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보다 연간 소요량 12만 앰플을 기준으로 약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위 사례는 정부차원에서 필수약품에 대해 위탁제조를 통해 안정적 공급을 한 최초의 사례이고, 2017년에는 "카나마이신" 위탁제조가 우수성으로 알려져 한센병 치료제인 "담손 정제"와 부정맥 치료제인 "맥실레틴 캡슐"의 위탁제조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등 국가필수약품의 위탁제조 사업이 인척되는 성과도 얻을 수 있었다.

가 식약처는 「약사법」 제83조의3에 따라 특례약품과 국가필수약품에 대한 각종 세공 및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수약품센터를 두고 관리·감독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부서원 한마디



의약품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이 낮은 약가로 제공되어 공급이 중단되고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보면서 국내 지급기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제도도 개선되고, 주사 위탁제조 사례와 같은 의약품 공급중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과장 김상범

"가나미인 주사" 위탁제조 권은 국내 제야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과 우리 부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행정·기술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내 제야시의 협력하여 국민보건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 정환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치료제를 정부가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던 최초의 사례를 이루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도도 안정적으로 확대되어 의약품 공급중단 문제가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무관 이근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정인, 사무관님, 업무담당자분들이 보여준 열정과 노력이 앞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제가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를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무관 김지선

업무담당자로서 환자들의 어려움과 의료현장의 다양한 공급요청에 안타깝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가나미인 주사 위탁제조 지원사례와 같이 필수치료제의 공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면서 많은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무관 김규서

인터뷰



▲ 의약품정책과 직원들

"결핵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질병이다보니 과거 영양상태와 보건위생이 좋지 못하던 시절에 유병률 높거나 유행하는 문해약품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국내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결핵 중에서도 '다제내성 결핵'은 기초 약제 두거지에 동시 내성을 나타내 치료 성공률이 60%에 불과하여 '슈퍼 결핵'이라고도 불리며 국내에는 약 900여명의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제내성 결핵 치료에 가나미인 주사제라는 항생제가 필수적인 기초약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2015년에 수입 원료의 공급 중단으로 국내 제조가 전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사한 성분의 항생제가 있었지만, 약물 특성상 주사 횟수가 3배로 증가되어 환자는 8개월간 720번 주사를 맞아야 하는 바늘 공포에 떨어야 했고 치료효과도 원천히 동일할 수는 없어 가나미인 주사제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의약품의 공급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면 정부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외국의 동일한 대체약을 긴급히 수입하거나,



행정의 지원 등을 통하여 공급을 안정화하였지만, 식약처는 필수약품의 안정공급을 통한 국민의 치료기의 보장 강화를 목표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효율적으로 시장기능을 보완하여 국내 지급기반을 구축하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정부에서 제조 필수비용을 제야시에 지원하여 필요한 약품을 위탁제조하는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기업은 불확실한 수요, 제품 개발 및 생산 비용 손실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급을 재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합리적인 제조비용을 제공하고 기업은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민간 협력 구조를 구축한 것입니다.

국내 위탁제조를 통하여 단가를 외국 수입 가격인 약 6,700원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2,490원으로 낮추어 연간 약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미인 주사제는 3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의 민간의 협력을 통하여 연간 약 12만 앰플이 의료현장의 다제내성 결핵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선례로 제야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져 식약처는 3종의 필수약품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국내 지급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필수적인 의약품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업무를 맡으며, 환자들의 어려움과 의료현장의 다양한 공급요청에 안타깝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공급문제를 해결하며 얻는 보람과 성취감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이렇게 좋은 선례를 쌓아나가며 의료현장, 제약업계 등과 협력한다면 약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업무를 추진하며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김규서



적극적인 민원 해결로 안전한 수학여행환경 조성에 기여

발간물

☰ ☂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발간물 1" (감사원)

☰ ☂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발간물 2 完" (감사원) 참조